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34권 제4호(통권 제136호)

2023 · 겨울호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는 형사정책분야에 관한 논문, 서평, 번역 등을 수록하는 학술지입니다.

본지의 발간목적은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자유로운 발표의 지면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의욕을 북돋우고 형사정책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논문의 의견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니고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본지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36호, 2023·겨울호)

[연구논문]

가족기능 및 학급분위기가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의 매개효과

▶ 박산울·이수정 1

판결문 데이터를 통해 본 음주운전 처벌규정 변경이 불러온 변화

— 재범발생율과 법원 선고형 변화를 중심으로 —

▶ 김현준·최민·황원석 33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적용 — 영국 기업과실치사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 김혜경 63

청소년 약물 오남용 경험이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

▶ 심혜인 103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ol. 34, NO. 4 (December, 2023)

[Article]

The Effect of Family Function and Classroom Climate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Violence Offending: Mediating Effect of Status Offense and Desensitization to Violence	
▶ San Ul Park · Soo Jung Lee	32
How court data reveals the impact of reformed Drinking Driving Punishment Act - Centered on changes in recidivism rates and court sentencing -	
▶ Hyunjun Kim · Min Choi · Wonseok Hwang	60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Focus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of UK -	
▶ Kim, Hyekyngng	101
The Effect of Juvenile Drug Abuse Experience on Suicidal Ideation, Suicidal Planning, and Suicide Attempts	
▶ Sim, Hye In	124

가족기능 및 학급분위기가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의 매개효과*

박산울** · 이수정***

국 | 문 | 요 | 약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환경적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이 어떠한 경로로 학교폭력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및 학급분위기가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을 거쳐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EBS 학교폭력진단검사 개발 과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 2,47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결측치를 제외하고 총 2,10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가족기능 및 학급분위기, 지위비행, 폭력둔감성, 학교폭력 가해 간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이 증가하였다. 둘째, 지위비행이 증가할수록 폭력둔감성이 증가하였으며, 폭력둔감성이 증가할수록 학교폭력 가해 또한 증가하였다. 셋째, 가족기능 및 학급분위기와 폭력둔감성 간 관계를 지위비행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기능, 학급분위기, 지위비행은 학교폭력 가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폭력둔감성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한 가족 및 학급에 대한 개입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방안과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3.12.31.4.1>.

❖ 주제어 :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 학교폭력진단검사, 가족기능, 학급분위기, 지위비행, 폭력둔감성, 경로분석

* 본 논문은 저자의 경기대학교 2023년 석사학위논문을 토대로 수정·보완됨.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석사과정, 주저자.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교신저자.

I. 서론

2022년과 2023년,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비슷한 시기 정순신 변호사가 이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하는 일이 벌어지며 학교폭력이 또다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다. 태국에서는 ‘The Glory Thai’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학교폭력을 고발하는 사회적 현상이 벌어졌고, 국내에서도 한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지에서 학교폭력 폭로가 이어지기도 했다.

학교폭력 문제가 이토록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것은 드라마에서 다뤄진 것과 같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의해 만성적으로 피해를 입는 아동은 신체적·심리적 고통, 집중의 어려움, 학교 공포증과 같은 단기적인 문제는 물론이고(Bernstein & Watson, 1997), 더 심각한 우울증이나, 또래들보다 더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는 것과 같은 장기적 문제 또한 경험할 수 있다(Olweus, 1993). 그중에서도 초기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자신을 괴롭히고 폄하하고, 거부하는 또래로부터 특히 심리적 피해를 입기 쉽다(Rigby, 1999).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가해는 2020년 0.7%, 2021년 0.9%, 2022년 1.3%로 나타났고, 피해는 2020년 1.8%, 2021년 2.5%, 2022년 3.8%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가 피해는 중·고등학생과 다르게 근래 들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학교폭력의 저연령화를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내에서 초등학교생이 학교폭력에 가담하게 되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연구 참가자를 초등학교생으로 한정하였다.

한편, 학교폭력의 부정적 영향은 비단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역시 학교폭력에 가담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학교폭력 가해 아동은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힘을 행사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 약물 남용과 같은 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더 높고(Eron et al., 1987; Farrington, 1993; Ross, 1996), 자신의 가해 행동을 인정하는 경우 우울증과 심리적 고통 또한 증

가한다(Vanderbilt & Augustyn, 2010). 이처럼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데, 실제 학교폭력 장면에는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중 한 가지만을 경험하지 않고 가해와 피해를 중복으로 경험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가해와 피해의 중첩에 대해 Del Rey 등(2012)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보다 피해자가 추후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 심지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와 동일한 수단으로 가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Cuadrado-Gordillo & Fernández-Antelo, 2014). 이렇게 가해에서 피해로, 피해에서 가해로 이어지는 학교폭력의 연속성을 끊고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겹게 되는 여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학교폭력 가해에 대한 예방적 개입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가족기능은 청소년기 문제 행동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고, 학급분위기는 여러 문헌에서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학급 환경과 학급 내 또래 관계를 포괄한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사회환경적 접근은 청소년 폭력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가정, 학교, 친구, 폭력매체 노출과 같은 맥락과 환경적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폭력행동이 발견되기까지의 심리 기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이은희 등, 2004). 김준호 등(1997)은 환경적 요소가 폭력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이어지기보다 폭력을 선호하는 생활방식을 채택하도록 하는 매개적 작용을 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위비행 경험과 폭력둔감성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고, 부정적인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 그리고 지위비행이 학생이 폭력적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폭력둔감성을 높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즉, 부정적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지위비행 경험을 증가시키고 폭력에 둔감하게 만듦으로써 학교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경로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주요 시사점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예방적 개입 방안의 수립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의 원인으로 빈번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가족의 기능적인 문제를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들은 공통적으로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즉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사회화시키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녀의 비행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본다(김준호 등, 2002).

가족기능의 문제가 학교폭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의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가정폭력을 비롯한 폭력적인 가족환경(Holt et al., 2008; 조춘범, 조남홍, 2011)과, 방임(이복실, 2007; 임구원, 2015)을 비롯한 아동 학대(Fisher et al., 2015; Shields & Cicchetti, 2001; 김지영, 박은예, 2013; 오정아, 김정은, 2013) 등 아동에 대한 직접적 폭력을 포함하는 가족 내 폭력적 분위기는 학교폭력 가해에 대해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위험 요인이다.

이와 함께 가족 간 유대 또한 학교폭력 가해의 원인으로 고려된다. 가족에 대한 유대와 청소년의 폭력 간 관련성은 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에 기반하여 이해할 수 있다.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와 맺는 유대가 비행을 억제하는데, 특히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비행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이때 애착은 감독, 의사소통, 동일시로 구분되는데, 부모의 감독(Marini et al., 2006)과 직접적인 규제(Idsoe et al., 2008) 모두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은영과 김경신(2014)은 인간 발달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기반하여 부모와의 관계, 가족 간 의사소통이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Troy와 Sroufe(1987)는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자녀는 다른 사람을 괴롭힐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Mann 등(2015)은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고, 부모의 지지가 낮을수록 학교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보호자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학교폭력에 연루될 가능성

도 작지만, 불안정한 애착은 학교폭력을 예측하고(Murphy et al., 2017), 또래 갈등과 거부를 초래하여 학교에서의 문제 행동으로 이어진다(Hong & Espelage, 2012).

2. 학급분위기

학급분위기는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하게 정의된다. Raskauskas 등(2010)은 학급분위기 측정에 학교 연결성, 학생-교사 관계, 학생-또래 관계 관련 문항이 포함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Pryce와 Frederickson(2013)은 학급분위기를 응집성, 학급 내 갈등, 수업에의 어려움, 만족도를 포함하는 교실 환경에 대한 학생의 인식으로 보았다. 이처럼 학급분위기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며, 단일한 정의 없이 다양한 이론적 틀들을 중첩적으로, 때로는 상충적으로 사용한다(Wang & Degol,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급의 폭력에 대한 태도, 학급 내 갈등, 학급 규범, 응집성 등의 요소를 모두 망라하고자 학급분위기를 변수명으로 사용하였다. 학급은 학교 내에서 학생과 가장 밀접한 환경으로, 학급의 전반적 태도와 학급응집성, 학급 내의 또래관계 등 학급 관련 요인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시에 또래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에 압력을 가하는 결과를 낳는 학급의 요소 중 하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급 규범이다. Ettekal 등(2015)은 학교폭력 및 방관 행동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신념 혹은 판단에 대한 ‘집단적 학교폭력 태도’,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에게 기대되는 일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반영하는 ‘명령적 규범’, 아동의 실제 행동적 반응과 집단 내 다양한 학교폭력 관련 행동이 존재하는 정도를 설명하는 ‘서술적 규범’, 더 큰 또래 집단이 도덕적으로 무관심하고 학교폭력을 제재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집단적 도덕적 무관심’의 네 유형의 또래 집단 규범들이 공존하며 학교폭력 및 방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학급 규범 중 학교폭력 태도와 관련하여 Salmivalli와 Voeten(2004)의 연구는 학급이 학교폭력을 반대하는 태도를 더 강력하게 지지할 경우 학생들이 피해자를 옹호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 행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방지 태도 점수가 낮은 학급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Saarento et al., 2013), 김정집(2005)은 교내의 환경이 폭력에 대해 허용적이고 동조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 자신의 태도와 무관하게 폭력에 허용적인 가치의 영향으로 폭력에 가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폭력의 측면에서 명령적 규범은 학교폭력 상황 목격 시 학급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래의 기대를 반영하며, 이는 특히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는 집단 규범적 압력으로 개념화된다(Pozzoli et al., 2012). Pozzoli와 Gini(2010)의 연구에서는 또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지 않는 청소년이 학교폭력에 더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적 규범은 간단하게 학급 내에서 학교폭력 행동이 나타나는 정도를 의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각에서 Sentse 등(2007)은 학교폭력이 규범적으로 발생하는 학급에서 학교폭력이 또래 거부보다 또래 선호와 관련이 더 높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학교폭력 장면에서 집단적 도덕적 무관심은 청소년이 집단으로 도덕적 이탈을 실천하는 경우에 학교폭력 행동에 뚜렷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집단 규범으로 해석될 수 있다(Ettekal et al., 2015). Gini 등(2014)은 학급 구성원들이 도덕적으로 무관심하다고 인식할 때 아동이 자신의 도덕적 무관심 수준을 넘어 공격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급응집성 또한 학급 규범과 별개로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황혜원 등, 2006). 학급응집성은 학급구성원이 학급집단에 갖는 감정과 느낌을 일컫는 말로, 개인과 학급집단 전체와의 관계를 강조한다(Schmuck & Schmuck, 1992). 이훈구 등(2000)의 연구에서도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학급이 일반 학급과 비교해 응집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3. 지위비행

지위비행이란 비행의 세부 분류로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를 뜻하는 범죄적 비행(index offenses)과 다르게, 형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지위를 고려할 때 사회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일컫는다. 즉,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광의적인 차원에서 성인이 되어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의 신분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정의되며(김미선, 2014), 무단결석, 음주, 가출, 음란물 접촉 등을 포함한다.

지위비행은 여러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 기능 장애(Voorhis et al., 1988), 가정폭력(김혜래, 이혜원, 2007), 가족 간 긍정적인 의사소통(Clark & Shields, 1997), 가정 수준의 부모관계와 학교 수준의 교우관계(이현철 등, 2016), 또래 집단과의 관계(김중근, 2018), 학교생활(임희연 등, 2023)이 청소년의 지위비행을 비롯한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되며, 부모의 감독 부족을 비행행동의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Loeber & Stouthamer-Loeber).

지위비행은 학교폭력 가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음주 및 흡연(Berthold & Hoover, 2000)과 같은 자기파괴적 행위에 가담하는 경향이 컸다. 김재엽과 이근영(2010)의 연구에서도 음주와 흡연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Haynie 등(2001)의 연구 역시 마찬가지로 음주 및 흡연과 같은 문제 행동 및 무단 결석, 위험한 장소에 방문하기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문제 행동 모두 학교폭력 가해와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비행 경험이 이후의 폭력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폭력 노출이 폭력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폭력에 대한 정서적 둔감화가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Mrug & Windle, 2013). Chen 등(2016)은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비행이 폭력에 대한 둔감화를 촉진하는 지역사회 폭력 노출과 연관된다고 주장하였고, 이춘화(1995)의 연구에서는 흡연과 음주 여부로 측정된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폭력에 대해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위비행이 가족기능 및 학급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고, 나이가 폭력둔감성을 매개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4. 폭력둔감성

둔감화(desensitization)란 특정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이에 대한 생리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Rule & Ferguson, 1986). 폭력에 대한 둔감화는 후속 폭력 행동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제안되었다(Mrug et al., 2008).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데서 비롯된 폭력에 대한 둔감화는 정서적 반응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서적 둔감화를 초래하고(Funk et al., 2004), 더불어 폭력이 불가피하고 일상적이라는 생각을 강조함으로써 인지적 둔감화를 야기하여 폭력을 검열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Galán Jiménez et al., 2019). 일반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면 유발되는 강한 부정적 반응이 폭력적 행동의 실행을 억제해야 하는데,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부정적 반응이 습관화를 통해 감소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덜 억제한다는 것이다(Bradshaw et al., 2009).

Farrel과 Bruce(1997)는 만성 폭력에 노출된 어린이가 폭력에 둔감해지고, 이로 인해 공격성이 증가함을 시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만성적인 폭력 노출로 인한 둔감화의 영향은 크게 가정과 지역사회 내 폭력 장면으로 나뉘어 연구되어왔다. 김재엽 등(2008)은 가정에서의 폭력 노출 경험이 모방이나 관찰이라는 학습 과정을 통해 폭력 행동의 결과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며 폭력에 대하여 용인하는 태도를 내면에 형성한다고 밝혔다. Esposito 등(2022)은 지역사회 내에서 반복되는 폭력 경험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폭력을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규범적이고 정당한 전략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공격적 행동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더 높은 수준의 지역사회 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폭력에 대해 도덕적으로 무관심한 신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비교적 컸으며, 나이가 학교폭력에도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종단적 연구는 여러 맥락에서 경험한 폭력이 폭력에 대한 둔감화로 이어지며, 이는 청소년기 후반의 더욱 폭력적인 행동과 연결됨을 확인한 바 있다(Mrug et al.,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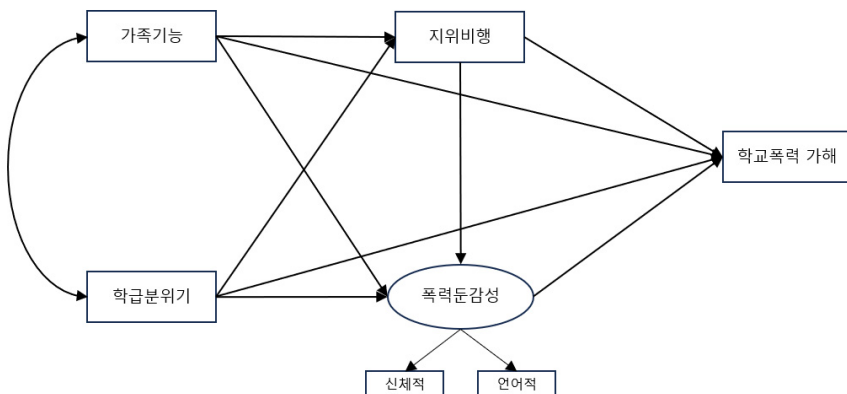
폭력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후 폭력과 공격성이 드물고 가능성이 낮은 행동이라는 믿음에서 폭력이 일상적이고 평범하며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신념이 바뀌기도 하는 과정은 인지적 둔감화라고 칭할 수 있는데, 인지적 둔감화는 폭력적인 신념을 더 수용하고 공격적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더 긍정적으로 하거나 사회 및 개인의 도덕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을 더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는다(Huesmann & Kirwi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가족 및 학급 환경과 지위 비행이 폭력노출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폭력둔감성을 높임으로써 학교폭력 가해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가설 및 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종합하여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종속변인인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에서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의 매개효과를 가정하여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 기능과 학급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지위비행이 증가하며, 가족기능 및 학급분위기와 지위비행이 모두 폭력둔감성을 매개하여 최종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인인 학급분위기와 가족기능이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을 매개하여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폭력둔감성의 경우 언어적 폭력둔감성과 신체적 폭력둔감성을 폭력둔감성이라는 하나의 잠재변수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는 EBS 학교폭력진단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과정에서 수집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 2,473명으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EBS에서 전국 초등학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검사를 소개한 뒤 학교 단위로 신청을 받아 모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2,473명의 데이터 중 종속변인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묻는 문항에 미응답한 371명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총 2,102명의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10세에서 13세, 평균 연령은 11.88세($SD=0.85$)였고, 전국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나 경기도, 전라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총 9개 초등학교에서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 중 남성은 1,320명(62.8%), 여성은 782명(37.2%)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117명(5.6%)으로 가장 적었고, 5학년이 904명(43.0%)로 가장 많았으며, 4학년은 550명(26.2%), 6학년은 531명(25.3%)으로 비슷하게 모집되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분류되는 5학년, 6학년이 1,435명(68.3%)으로 중학년으로 분류되는 3학년과 4학년(667명, 31.7%)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1,068명(50.8%)로 가장 참가자 수가 많았고, 부산광역시는 609명(29.0%), 울산광역시 311명(14.8%)으로 적지 않은 수가 모집되었으나, 광주광역시와 전라도가 각각 70명(3.3%), 44명(2.1%)으로 그 수가 비교적 적었다. 다만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그 외 다른 지역들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수도권이 1,068명(50.8%), 비수도권이 1,034명(49.2%)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참가자 수에 큰 차이가 없었다.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 및 매개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EBS 학교폭력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EBS 학교폭력진단검사는 학생의 정서적 상태와 폭력 위험성을 평가하고, 학교폭력 문제 유형에 적합한 지도·접근 유형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이수정, 정혜정, 남궁혜정, 2023).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응답한다.

본 연구는 EBS 학교폭력진단검사의 초등용 검사지 중 일부 척도들만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독립변인인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 측정을 위하여 해당 검사의 외부 요인 척도들 중 가족요인과 학급요인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요인 척도는 “우리 가족은 같이 식사한다.”와 같이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 의사소통, 물리적 시간 공유 등 가족의 기능을 묻는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자신의 가족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 측정에 사용한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alpha=.65$ 로 나타났다.

학급요인 척도는 “우리 반 아이들은 서로 놀리거나 욕을 많이 한다.”와 같이 학급 내 폭력 노출, 학급 내 폭력에 대한 허용 수준, 학급에서 느끼는 안전감, 응집성 등 학급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평가하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는 자신이 속한 학급이 안전하며 폭력에 대해 배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학급분위기 측정에 사용한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alpha=.60$ 이었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지위비행의 측정에는 EBS 학교폭력진단검사의 초등용 문항의 폭력위험성 척도에 속하는 비행경험 척도를 사용하되, 학생 신분에서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의 여부만을 확인하고자 해당 척도의 문항 중 성인의 신분으로도 문제가 되는 행위와 관련된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지위비행은 무단결석, 음주, 기출, 음란물 접촉 경험을 묻는 총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지위비행 측정에 사용한 문항들의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alpha=.50$ 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의 문항 수가 4개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신뢰도 계수를 수용하였다.

폭력둔감성은 EBS 학교폭력진단검사의 폭력위험성 척도 중 폭력둔감성(신체) 척도와 폭력둔감성(언어) 척도를 잠재변수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두 척도 모두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에 대한 민감성 수준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폭력둔감성(신체)의 경우 “장난이라면 친구를 때려도 괜찮다”, 폭력둔감성(언어)의 경우 “친구의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것은 괜찮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척도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둔감해졌음을 의미하며, 폭력을 민감

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폭력둔감성(신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alpha=.72$, 폭력둔감성(언어) 척도의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alpha=.70$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학교폭력 가해는 신체적 공격에 해당되는 폭행과 관계적 공격에 해당되는 따돌림의 가해 여부를 묻는 2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앞선 척도들과 마찬가지로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에 더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아울러 연구자의 목적이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가 아닌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추정하는 데에 있는 경우 문항의 묶음으로 모형이 구성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선행연구의 견해(Little et al., 2013; Matsunaga, 2008)를 참고하여, 단일차원으로 구성개념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연구에 사용된 모든 척도의 점수를 각 척도에 포함되는 문항 점수의 총합으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별 내적일관성 검증,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전체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에는 SPSS 23.0을 사용하였고, 앞서 수립한 가설을 검증을 위한 경로분석에는 AMOS 26.0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인들에 대한 응답경향성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점수 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 간 관련성은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활용한 상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가설 검증을 위해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설정한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모형에 포함된 개별 경로의 회귀계수를 산출하였다. 적합도 지수로는 카이제곱 값과 표본 크기에 덜 민감한 것으로 알려진 표준카이제곱(normed chi-square)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후, 가장 좋은 모형을 찾기 위해 연구

모형에 포함된 경로 중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하여 수정 모형을 구성하였고, 수정 모형의 적합도와 처음에 설정한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형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한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유의도를 검증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2	3	4	5	6
1. 가족기능		1					
2. 학급분위기		.241**	1				
3. 지위비행		-.247**	-.345**	1			
폭력둔감성	4. 신체	-.274**	-.427**	.439**	1		
	5. 언어	-.292**	-.432**	.426**	.670**	1	
6. 학교폭력 가해		-.118**	-.188**	.191**	.333**	.298**	1
M		11.05	18.60	5.26	6.59	7.50	2.70
SD		2.61	2.888	1.585	2.199	2.385	0.854

**p <.01

2. 모형 분석

가. 연구 모형의 적합도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검증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χ^2 은 5.694(df=3, $p=.128$)로 p 값이 .05보다 크고, 표준카이제곱(normed chi-square)값이 1.898로 절대값 2보다 작아 연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도 지수 역시 CFI가 .999, TLI가 .995로 .95보다 큰 값을 가졌고, RMSEA는 .021로 .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 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2>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5,694	3	1,898	.999	.995	.021

나.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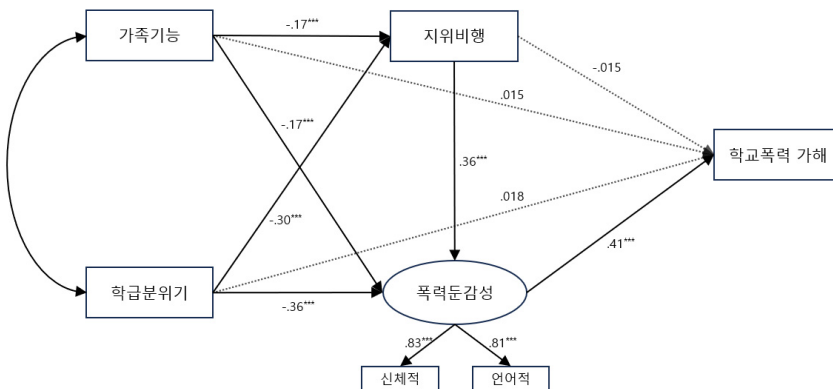
연구 모형에 포함된 각 경로의 분석 결과는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로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기능과 학교폭력 가해 간의 직접경로, 학급분위기와 학교폭력 가해 간 직접경로, 지위비행과 학교폭력 가해 간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폭력둔감성 변인만이 학교폭력 가해로 향하는 직접경로($\beta=.409$,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변인들은 학교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폭력둔감성만이 학교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폭력둔감성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path		B	β	S.E.	T-value
가족기능	→ 지위비행	-.105	-.174	.015	-8.375***
	→ 폭력둔감성	-.117	-.168	.014	-8.147***
	→ 학교폭력 가해	.005	.015	.007	.678
학급분위기	→ 지위비행	-.166	-.303	.011	-14.613***
	→ 폭력둔감성	-.226	-.358	.014	-16.415***
	→ 학교폭력 가해	.005	.018	.007	.710
지위비행	→ 폭력둔감성	.417	.363	.025	16.615***
	→ 학교폭력 가해	-.008	-.015	.014	-.582
폭력둔감성	→ 학교폭력 가해	.192	.409	.016	11.925***

***p <.001

[그림 2] 연구 모형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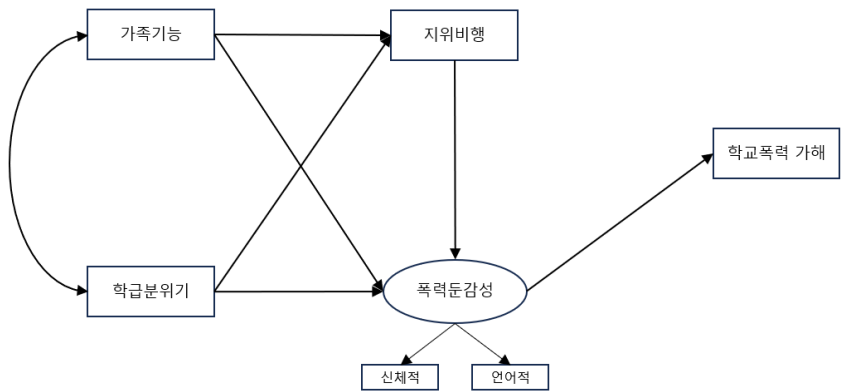


다. 수정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에 유의하지 않은 경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모두 학교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기존 연구 모형의 가설이 일부 기각되었음을 의미하며, 모형이 비교적 간명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개별 경로를 제거하여 더욱 간명한 모형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구성된 수정 모형은 [그림 3]과 같고, 기존 연구 모형과 수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림 3] 수정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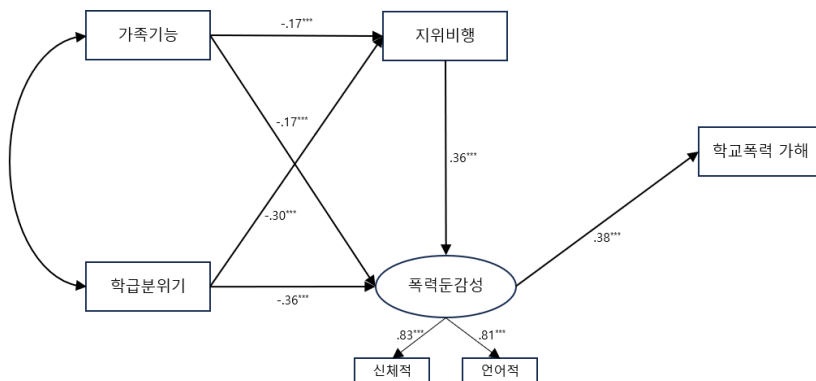
<표 4> 연구 모형과 수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χ^2	df	χ^2/df	CFI	TLI	RMSEA	AIC
연구모형	5,694	3	1,898	.999	.995	.021	53,694
수정모형	7,056	6	1,176	.999	.999	.009	49,056

수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은 7.056(df=6, p=.316)으로 유의확률이 .05보다 높았고, 표준카이제곱(normed chi-square)값이 1.176으로 절대값 2보다 작아 연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도 지수 또한 CFI와 TLI 모두 .999로 .95보다 큰 값을 가졌고, RMSEA는 .009로 .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 모형과 마찬가지로 수정 모형 역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수정 모형은 연구 모형에 비해 표준카이제곱 값과 RMSEA가 감소하고, TLI가 증가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형 비교를 위해 AIC 지수를 함께 살펴 보았다. AIC 값은 낮을수록 더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연구 모형과 수정 모형의 AIC 값을 비교한 결과 수정 모형이 연구 모형에 비해 AIC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간명한 모형인 수정 모형이 더욱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정 모형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모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최종 모형 및 경로계수



라. 최종 모형의 효과분해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의 매개효과 및 최종적으로 결정된 모형의 경로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한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직·간접효과의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최종 모형에 포함된 모든 경로들의 직·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폭력둔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위비행이 부분매개하고, 지위비행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폭력둔감성이 완전매개함을 의미한다. 즉, 연구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이 매개함을 시사하였다.

〈표 5〉 최종 모형의 효과분해 결과

path		effect	B	β	S.E.	95% CI	
						lower	upper
가족기능	→지위비행	직접효과	-.105***	-.174	.013	-.131	-.080
	→폭력둔감성	직접효과	-.116***	-.167	.015	-.147	-.087
		간접효과	-.044***	-.063	.006	-.056	-.033
	→학교폭력 가해	간접효과	-.029***	-.088	.003	-.035	-.023
학급분위기	→지위비행	직접효과	-.166***	-.303	.012	-.191	-.141
	→폭력둔감성	직접효과	-.225***	-.357	.014	-.253	-.197
		간접효과	-.069***	-.110	.007	-.083	-.057
	→학교폭력 가해	간접효과	-.053***	-.178	.004	-.060	-.045
지위비행	→폭력둔감성	직접효과	.416***	.363	.027	.363	.470
	→학교폭력 가해	간접효과	.075***	.138	.006	.063	.087
폭력둔감성	→학교폭력 가해	직접효과	.179***	.382	.010	.160	.200

***p <.001

V. 결 론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부정적일수록 지위비행이 증가하였다. 가족기능이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에서도 꾸준히 보고된 바 있다. 일례로, 김준호 등(2002)은 가족이 규범과 정서적 안정의 제공에 실패하는 경우 지위비행의 발생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급분위기가 지위비행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학급 내에서의 호의적인 사회적 관계를 비롯한 학급 분위기가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Sprott(2004)의 연구와 궤를 같이한다.

둘째로,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부정적인 경우 지위비행이 증가하며,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부정적이고 지위비행이 증가하는 경우 폭력둔감성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이때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폭력둔감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지위비행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land(1996)는 폭력적인 환경에서 사는 아동들은 폭력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용인되는 수단이라는 것을 배운다고 주장하였고, Mrug 등(2016)은

여러 맥락에서 경험한 폭력이 폭력에 대해 둔감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는데, 부정적 가족기능과 부정적 학급분위기, 이에 따른 빈번한 지위비행이 폭력둔감성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요인들이 청소년이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로,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이 매개변인으로 기능하였는데, 이때 지위비행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폭력둔감성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는 다소 상이하게 가족기능, 학급분위기, 지위비행은 학교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폭력둔감성을 매개하는 경우에만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부정적인 가족기능과 부정적인 학급분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지위비행 경험이 비교적 많다고 하더라도 폭력에 둔감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가해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폭력둔감성이라는 매개변인은 학교폭력 가해를 일으키는 데에 매우 직접적이고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활발히 연구되지 않은 폭력둔감성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여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라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을 거쳐 학교폭력 가해에 이르는 경로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특히 가족기능, 학급분위기, 지위비행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폭력둔감성이 완전매개하였다는 점은 눈여겨볼 직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가해로 향하는 경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폭력둔감성에 대한 개입이 학교폭력 예방에 특히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폭력에 대한 둔감성을 완충하는 요인으로서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폭력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강조하고, 피해자를 향한 공감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학교폭력의 종류에 대해 지속해서 주지시켜 학교폭력을 장난이 아닌 폭력 그 자체로 인식할 수 있게끔 접근하는 것 또한 폭력에 민감성을 갖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들의 폭력 노출 경험을 줄임으로써 폭력에 대한 둔감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학교폭력의 예방에 있어서 가족과 학급의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인이다. 폭력둔감성만큼 결정적인 요인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았으나, 지위비행과 폭력둔감

성에 차례로 영향을 미쳐 결국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의 회복은 학교폭력 가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안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인이 단순히 가정 및 학급 장면에서의 폭력에 대한 노출 경험인 아닌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임을 고려하면, 가족 구성원, 교사 및 학급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나 가족과 학급의 폭력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모두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는 폭력에 대한 둔감화에 따른 공격적 행동을 폭력적인 미디어 혹은 지역사회 폭력 노출과 관련하여서만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결과이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비슷한 결과가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에서도 도출되는지, 혹은 비단 학교폭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범죄 장면의 범죄 행동 발달 궤적에 있어서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남녀 학생 참가자를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학년, 지역 및 여성의 표본이 적고, 몇몇 지역이 누락된 점, 표본 추출 방식이 학교의 자율적인 신청으로만 진행된 점으로 인해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문제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체적 폭력인 폭행과 관계적 폭력인 따돌림 점수를 합산하였다. 하지만 Wang 등(2009)는 남학생은 신체적 또는 언어적 학교폭력에 더 많이 가담하는 반면, 여학생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형태의 학교폭력에 가담한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관계적으로 공격적이며(Crick & Grotpeter, 1995), 관계적 피해를 더 많이 입는다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Nixon et al., 2011). 본 연구에서 합산하여 사용한 학교폭력 가해 측정 문항은 각각 남학생에게서 우세한 학교폭력 유형과 여학생에게서 우세한 학교폭력 유형으로, 각 학교폭력 가해 유형별 발달경로와 성차를 살펴볼 수는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성별과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행동의 경로를

성별과 각 폭력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거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변인으로 추가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 가죽기능과 학급분위기가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을 거쳐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시간적 선후를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부정적 가죽기능과 학급분위기, 빈번한 지위비행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폭력에 더욱 둔감하게 만든다는 인과적인 가설을 엄격하게 증명하기에는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가 향후 종단적 연구를 통해 추가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에서 피해와 가해를 중복해서 경험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국내의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가해 경험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학생 중 38.4%가 피해 경험도 함께 보고하였다(김혜자 등, 2021). 매우 심각하지 않은 범죄의 피해자는 둔감화로 인해 피해자가 아닌 사람보다 범죄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반응이 적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Di Tella et al., 2019),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 또한 폭력에 대한 둔감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변인으로 추가하여 함께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관심은 절대 적지 않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학교폭력의 예방보다도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벌과 대책에 이목이 쏠리는 것이 사실이다.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는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경험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학교폭력의 대책은 엄중한 처벌보다도 학교폭력의 예방을 우선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와 같이 학교폭력 발생 기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가 향후에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연구 결과가 단순한 연구 결과로만 그치지 않고 정책적 관심과 논의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정집. (2005). 초기 청소년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학교환경과 학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1), 421-448.
- 김미선. (2014). 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재엽, 이근영. (2010).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2), 53-74.
-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6, 31-59.
- 김준호, 박정신, 김은경. (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안호용, 김선애, 김선업. (2002). 가족의 구조와 기능과 청소년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13(1), 225-267.
- 김중곤. (2018). 청소년의 비행 발달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분석. 청소년학 연구, 25(1), 259-287.
- 김지영, 박은예. (2013). 부모의 학대와 중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행동간 관계: 자기통제력과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0(9), 25-49.
- 김혜래, 이혜원. (2007). 학교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비행과의 관계. 한국아동복지학, 23, 33-63.
- 김혜자, 금종예, 박미리, 최은지, 유효성, 이은주. (2021).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 박은영, 김경신. (2014).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경험에 대한 생태학적 변인의 영향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3), 91-118.
- 오정아, 김정운. (2013). 학교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글로벌청소년학연구, 3(1), 25-48.
- 이복실. (2007). 중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공격성, 학교폭력경험 및 폭력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13, 25-50.

- 이수정, 정혜정, 남궁혜정. (2023). 학교폭력진단검사. 서울: EBS미디어.
-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 폭력과의 관계: 분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3-145.
- 이춘화. (1995).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현철, 김경식, 최성보. (2016). 한국 청소년의 지위비행·범죄행위에 대한 중단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4(2), 125-147.
- 이훈구, 권준모, 곽금주, 김범준, 홍영오. (2000). 학원폭력 예방프로그램 연구 보고서.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 임구원. (2015).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교정복지연구, 37, 121-139.
- 임희연, 정일환, 문상호 (2023). 청소년 비행의 영향 요인 분석: 학교생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3(1), 111-134.
- 조춘범, 조남홍. (2011).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 청소년학연구, 18(4), 75-102.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황혜원, 박현순, 신정아. (2006). 초기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생태체계적 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아동과 권리, 10(4), 497-526.

[외국문헌]

- Beland, K. R. (1996). A school-wide approach to violence prevention. In R. L. Hampton, P. Jenkins, & T. P. Gullotta (Eds.), Preventing violence in America (pp.209-231). Thousand Oaks, CA: Sage.
- Bernstein, J. Y., & Watson, M. W. (1997). Children who are targets of bullying: A victim patter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483-498.
- Berthold, K. A., & Hoover, J. H. (2000). Correlates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among intermediate students in the Midwestern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1(1), 65-78.

- Bradshaw, C. P., Rodgers, C. R. R., Ghandour, L. A., & Garbarino, J. (2009). Social-cognitive mediators of the association between community violence exposure and aggressive behavior.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4(3), 199-210.
- Bradshaw, C. P., Rodgers, C. R., Ghandour, L. A., & Garbarino, J. (2009). Social-cognitive mediators of the association between community violence exposure and aggressive behavior.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4(3), 199.
- Bronfenbrenner, U. (1977).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7), 513.
-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850.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hen, P., Voisin, D. R., & Jacobson, K. C. (2016). Community violence exposure and adolescent delinquency: Examining a spectrum of promotive factors. *Youth & Society*, 48(1), 33-57.
- Clark, R. D., & Shields, G. (1997). Family communication and delinquency. *Adolescence*, 32(125), 81-93.
- Craven, R., & Parada, R. (2002). Beyond Bullying Secondary Schools Program: Consultant's handbook. Publication Unit, Self-concept Enhancement and Learning Facilitation (SELF)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Crick, N. R., Nelson, D. A., Morales, J. R., Cullerton-Sen, C., Casas, J. F., & Hickman, S. E. (2001). Relational victimis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I hurt you through the grapevine. In J. Juvonen, A. Nishina,

- & S. Graham (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pp.196-214). New York: Guilford.
- Cuadrado-Gordillo, I., & Fernández-Antelo, I. (2014). Cyberspace as a generator of changes in the aggressive-victim rol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6, 225-233.
- del Rey, R., Elipe, P., & Ortega-Ruiz, R. (2012). Bullying and cyberbullying: overlapping and predictive value of the co-occurrence. *Psicothema*, 24(4), 608-613.
- Di Tella, R., Freira, L., Gálvez, R. H., Schargrodsky, E., Shalom, D., & Sigman, M. (2019). Crime and violence: Desensitization in victims to watching criminal event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59, 613-625.
- Eron, L. D., Huesmann, L. R., Dubow, E., Romanoff, R., & Yarmel, P. W. (1987). Aggression and its correlates over 22 years. *Childhood aggression and violence: Sources of influence, prevention and control*, 249-262.
- Esposito, C., Spadari, E. M., Caravita, S. C. S., & Bacchini, D. (2022). Profiles of Community Violence Exposure, Moral Disengagement, and Bullying Perpetration: Evidence from a Sample of Italian Adolesc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9-10), 5887-5913.
- Ettekal, I., Kochenderfer-Ladd, B., & Ladd, G. W. (2015). A synthesis of person- and relational-level factors that influence bullying and bystanding behaviors: Toward an integrative framework.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3, 75-86.
- Farrell, A. D., & Bruce, S. E. (1997). Impact of exposure to community violence on violent behavior and emotional distress among urban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6(1), 2-14.
- Farrington, D. P. (1993).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bullying. *Crime and justice*, 17, 381-458.

- Fisher, H. L., Caspi, A., Moffitt, T. E., Wertz, J., Gray, R., Newbury, J., Ambler, A., Zavos, H., Danese, A., Mill, J., Odgers C.L., Pariante, C., Wong, C.C., & Arseneault, L. (2015). Measuring adolescents' exposure to victimization: the environmental risk (E-Risk) longitudinal twin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7(4pt2), 1399-1416.
- Galán Jiménez, J. S. F., Sánchez-Armáss Cappello, O., & García y Barragán, L. F. (2019).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Desensitization to Violence Scale for Adolescents. *Nova scientia*, 11(22), 274-292.
- Gini, G., Pozzoli, T., & Bussey, K. (2015). The role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moral disengagement in peer aggression and bystanding: A multilevel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3, 441-452.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ynie, D. L. (2001). Delinquent peers revisited: Does network structure matt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4), 1013-1057.
- Haynie, D. L., Nansel, T., Eitel, P., Crump, A. D., Saylor, K., Yu, K., & Simons-Morton, B. (2001).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Distinct Groups of At-Risk Youth.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29-49.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lt, M. K., Kaufman Kantor, G., & Finkelhor, D. (2008). Parent/child concordance about bullying involvement and family characteristics related to bullying and peer victimization. *Journal of school violence*, 8(1), 42-63.
- Hong, J. S., & Espelage, D. L. (2012). A review of research on bullying and peer victimization in school: An ecological system analysi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4), 311-322.
- Hooper, Daire & Coughlan, Joseph & Mullen, Michael. (2007). *Structural*

- Equation Modeling: Guidelines for Determining Model Fit. *The Electronic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Methods*. 6, 53-60.
- Hu, L.-T., & Bentler, P. M. (1995). Evaluating model fit.
- Huesmann, L. R., & Kirwil, L. (2007). Why observing violence increases the risk of violent behavior in the observ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dsoe, T., Solli, E., & Cosmovici, E. M. (2008). Social psychological processes in family and school: More evidence on their relative etiological significance for bullying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4(5), 460-474.
- Jain, S., & Cohen, A. K. (2013). Behavioral Adaptation Among Youth Exposed to Community Violence: A Longitudinal Multidisciplinary Study of Family, Peer and Neighborhood-Level Protective Factors. *Prevention Science*, 14(6), 606-617.
- Kärnä, A., Salmivalli, C., Poskiparta, E., & Voeten, M.,J,M. (2008). Do bystanders influence the frequency of bullying in a classroom?, The XIth EARA conference, Turin, Italy.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86). Family factors as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juvenile conduct problems and delinquency. *Crime and justice*, 7, 29-149.
- Loeber, R., Burke, J. D., & Pardini, D. A. (2009). Development and etiology of disruptive and delinquent behavio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5, 291-310.
- Mann, M. J., Kristjansson, A. L., Sigfusdottir, I. D., & Smith, M. L. (2015). The role of community, family, peer, and school factors in group bullying: implications for school-based intervention.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85(7), 477-486.

- Marini, Z. A., Dane, A. V., Bosacki, S. L., & Ylc-Cura. (2006). Direct and Indirect Bully-Victims: Differential Psychosocial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Involved in Bullying and Victimization. *Aggressive Behavior*, 32(6), 551-569.
- Matsunaga, M. (2008).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primer.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2(4), 260-293.
- Mrug, S., Loosier, P. S., & Windle, M. (2008). Violence exposure across multiple contexts: Individual and joint effects on adjust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8(1), 70-84.
- Mrug, S., Madan, A., & Windle, M. (2016). Emotional desensitization to violence contributes to adolescents' violent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 75-86.
- Mrug, S., Madan, A., Cook, E. W., & Wright, R. A. (2015). Emotional and physiological desensitization to real-life and movie viol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 1092-1108.
- Murphy, T. P., Laible, D., & Augustine, M. (2017). The influence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on bully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 1388-1397.
- Nixon, C. L., Linkie, C. A., Coleman, P. K., & Fitch, C. (2011). Peer relational victimization and somatic complaint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9(3), 294-299.
- Pozzoli, T., & Gini, G. (2010). Active defending and passive bystanding behavior in bullying: The rol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peer pressur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 815-827.
- Pozzoli, T., Gini, G., & Vieno, A. (2012). The role of individual correlates and class norms in defending and passive bystanding behavior in bullying: a multilevel analysis. *Child development*, 83(6), 1917-1931.

- Pryce, S., & Frederickson, N. (2013). Bullying behaviour, intentions and classroom ecology. *Learning Environments Research*, 16, 183-199.
- Raskauskas, J. L., Gregory, J., Harvey, S. T., Rifshana, F., & Evans, I. M. (2010). Bullying among primary school children in New Zealand: Relationships with prosocial behaviour and classroom climate. *Educational Research*, 52(1), 1-13.
- Rey Alamillo, R. D., Elipe Muñoz, P., & Ortega Ruiz, R. (2012). Bullying and cyberbullying: Overlapping and predictive value of the co-occurrence. *Psicothema*, 24(4), 608-613.
- Rigby K. (1999). Peer victimisation at school and the health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Pt 1), 95-104.
- Ross, D. M. (1996). Childhood bullying and teasing: What school personnel, other professionals, and parents can do.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Rule, B. G., & Ferguson, T. J. (1986). The effects of media violence on attitudes, emotions, and cogni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42(3), 29-50.
- Saarento, S., Kärnä, A., Hodges, E. V., & Salmivalli, C. (2013). Student-, classroom-, and school-level risk factors for victimiza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3), 421-434.
- Salmivalli, C., & Voeten, M. (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ur in bullying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3), 246-258.
- Schmuck, R. A., & Schmuck, P. A. (1992). Group processes in the classroom. 김경식 역(2000). *학급의 사회심리학: 협력학습 조성을 위한 기초이론과 실제*. 서울: 원미사.
- Sentse, M., Scholte, R., Salmivalli, C., & Voeten, M. (2007). Person-group dissimilarity in involvement in bullying and its relation with social statu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1009-1019.

- Sharp, S., & Smith, P. (2002). *School bullying: Insights and perspectives*. Routledge.
- Shields, A., & Cicchetti, D. (2001). Parental maltreatment and emotion dysregulation as risk factors for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3), 349-363.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prott, J. (2004). The development of early delinquency: Can classroom and school climates make a difference?.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46(5), 553-572.
- Steiger, J. H. (2007). Understanding the limitations of global fit assessmen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5), 893-898.
- Troy, M. & Sroufe, L.A. (1987). Victimization among preschoolers: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 theo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166-172.
- Ullman, J. B., & Bentler, P. M.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andbook of Psychology, Second Edition*, 2.
- Vaernes, R. J., Myhre, G. & Aash (1991).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psychological factors and immune levels among military aviators. *Work and Stress*, 5, 5-16.
- Vanderbilt, D., & Augustyn, M. (2010). The effects of bullying.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20(7), 315-320.
- Van Griethuijsen, R. A., van Eijck, M. W., Haste, H., Den Brok, P. J., Skinner, N. C., Mansour, N., Gencer, A. S., & BouJaoude, S. (2015). Global patterns in students' views of science and interest in science.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45, 581-603.

- Voorhis, P. V., Cullen, F. T., Mathers, R. A., & Garner, C. C. (1988). The impact of family structure and quality on delinquency: A comparative assessment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factors. *Criminology*, 26(2), 235-261.
- Wang, J., Iannotti, R. J., & Nansel, T. R. (2009). School bullying among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Physical, verbal, relational, and cyber.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5(4), 368-375.
- Wang, M. T., & Degol, J. L. (2016). School climate: A review of the construct, measurement, and impact on student outcome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8(2), 315-352.

The Effect of Family Function and Classroom Climate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Violence Offending: Mediating Effect of Status Offense and Desensitization to Violence

San UI Park* · Soo Jung Lee**

To understand the socio-environmental causes of school violence, an explanation of how environmental factors lead to school violence is necessary. The present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athways through which family functioning and classroom climate influence school violence offending through status offenses and desensitization to viole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Violence Assessment Inventory, 2,473 samples were collected, and 2,102 samples were used in the analysis after excluding missing data.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nd bootstrapping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negative family functioning and classroom climate increase status offenses, and desensitization to violence increased offending of school violence. However, family functioning, classroom climate, and status offenses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school violence offending, and only desensitization to violence had a direct effect on school violence offend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erventions to prevent school violence should be directed at increasing sensitivity to violence.

❖ Key words: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offending, School Violence Assessment Inventory, family functioning, classroom climate, status offense, desensitization to violence, path analysis

*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Criminal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Criminal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판결문 데이터를 통해 본 음주운전 처벌규정 변경이 불러온 변화 - 재범발생율과 법원 선고형 변화를 중심으로 -

김현준* · 최민** · 황원석***

국 | 문 | 요 | 약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듯이,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확률이 상당히 높으므로 단순히 음주운전이 도로교통의 안전만을 위협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타인의 생명, 신체 침해 위험도 발생시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회는 최근 발생한 윤창호씨 사망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전국민적인 분노여론이 형성된 것에 힘입어 음주운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개정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2023. 1. 3.에 이르러서야 다시금 보완입법이 행해지는 등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계속해서 최근까지 변경되어 왔다. 이 논문은 입법자가 의도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음주운전 재범발생율을 줄였는지, 혹은 잦은 법률변경이 선고형의 혼선을 가중시킨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최근 10년간 판결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이 재범발생율을 낮추지 못하고, 선고형만을 가중시켰다는 내용의 통계적 분석 결과가 관찰되었다. 위 분석결과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의 개정을 하기보다는 적절한 형량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3.12.31.4.33>.

❖ 주제어 : 음주운전, 처벌강화, 재범억제, 재범발생율, 선고형

* 주저자 겸 교신저자: LBox Co., Ltd. Legal AI Researcher, 변호사(rlagus57@naver.com)

** 공동저자: LBox Co., Ltd. Data Scientist

*** 공동저자: LBox Co., Ltd. Researcher Scientist,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 조교수

I. 서론

2015. 1. 10. 새벽 1시 29분경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빵소니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화물차기사로 일하며 만삭 아내의 교원임용시험을 뒷바라지하던 29세 가장 강경호 씨로, 만삭 아내에게 주기 위하여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도중이었다는 사실이 후에 밝혀졌다. 이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중심으로 점차 퍼져나갔고, 전국민적인 분노여론이 발생하게 되자 경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의 CCTV영상을 확보한 후 이 영상을 인터넷 상에 공개하면서까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결국 사건 발생 후 19일만에 범인 허모 씨(37세)가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되었다. 허모 씨는 사고 당시 소주를 4병 이상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 9. 25. 오전 2시 25분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운전자는 0.181%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던 박모씨(26세)로, 당시 횡단보도에 서 있던 3명의 일행을 차로 치어 그 중 1명을 사망하게 하였다. 사망자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중이던 윤창호(22세)씨로 카투사에서 군복무를 하다 휴가를 나와 참변을 당하게 되었다. 해마다 거듭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분노한 국민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각종 커뮤니티에서 강하게 표출하였고, 이를 의식한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하한을 높이고, 재범의 처벌형을 대폭 상향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놓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윤창호법의 탄생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재범 가중처벌 규정은 2021. 11. 21.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고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가중처벌규정에서의 ‘음주운전 규정 2회 이상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나, 재범 가중처벌규정에서 일률적으로 2회 이상 위반의 경우 2년 이상 징역형의 하한 및 1천만원 이상 벌금형의 하한을 둔 것에 대하여는 형벌과 책임 사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는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

것이 아니고, 전과의 시간적 제한이나 재범에서의 불법 행위유형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재범이기만 하면 과도한 하한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법조인들과 법학자들은 곧 이를 보완한 입법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모두의 예상처럼 국회는 2023. 1. 3.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반영하여 재범 가중처벌 규정을 보완하였고, 2023. 7. 4.부터 보완된 입법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양형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중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벌금형 포함)을 2023. 4. 24.도입하였고, 2023.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과 위헌 선언, 보완 입법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과연 입법 목적을 달성하였을까. 입법자가 기대하였던 것처럼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음주운전 발생이 억제되었는지, 혹은 법률의 잦은 변경으로 법원 선고형의 혼선을 유발한 것은 아닌지 여러 의문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재범 발생, 선고형 등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왔는지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뢰도 높은 정보인 법원 판결문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딥러닝 기반 정보추출 기술을 활용하여 판결문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한 정보를 대상으로 대규모 통계분석을 수행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발생이 억제되었는지, 아니면 법률의 잦은 변경으로 법원 선고형에 혼선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II. 배경지식 및 가설 설정

1. 음주운전 처벌 근거규정의 개정 연혁

가. 음주운전 처벌강화규정의 신설

국회는 2018. 12. 24.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¹⁾하였는데, 변경된

1) 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었음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음주운전 처벌강화규정 신설 전후 주요내용 비교

	개정 전	개정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하한	0.05%	0.03%
재범 면허취소 기준	3회 이상	2회 이상
재범 가중처벌	3회 이상 ⇒ 1~3년 징역 or 500만원~1천만원 벌금	2회 이상 ⇒ 2~5년 징역 or 1~2천만원 벌금
음주측정불응 처벌	1~3년 징역 or 500만원~1천만원 벌금	1~5년 징역 or 500만원~2천만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른 처벌	0.2% 이상	0.2% 이상
	1~3년 징역 or 500만원~1천만원 벌금	2~5년 징역 or 1~2천만원 벌금
	0.1~0.2%	0.08~0.2%
	6개월~1년 징역 or 300만원~500만원 벌금	1~2년 징역 or 500만원~1천만원 벌금
	0.05~0.1%	0.03~0.08%
	6개월 이하 징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or 500만원 이하 벌금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위와 같이 법률이 개정되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1. 11. 25.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재범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일부 위헌결정을 하게 된다. 결정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은 ‘2006. 6. 1. 이후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이유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재범 가중처벌 부분에 대하여는 1)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후범을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 2)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정도가 큰 행위유형과 경미한 행위유형의 구분 없이 법정형 하한을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으로 구 도로교통법²⁾ 제148조의2 제1항 재범 가중처벌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2)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 국회의 보완입법

국회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2023. 1. 3. 도로교통법 해당 부분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보완입법 신설 전후 주요내용 비교

	보완입법 전	보완입법 후
처벌 대상 재범의 의미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 2항을 위반한 사람
음주측정불응 재범 처벌	2~5년 징역 or 1~2천만원 벌금	1~6년 징역 or 500만원~3천만원 벌금
재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가중처벌	0.03% 이상	0.2% 이상
	2~5년 징역 or 1~2천만원 벌금	2~6년 징역 or 1~3천만원 벌금
		0.03~0.2%
		1~5년 징역 or 500만원~2천만원 벌금

2. 현재 시행중인 양형 기준 및 법원의 선고형 결정 과정

가. 현재 시행중인 양형 기준

교통범죄에 대하여는 원래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³⁾만이 존재하였고 2016년 1차 수정에서도 위 두 가지 유형의 양형기준만 존재하는 기조가 유지되었다. 그러다 2016년 2차 수정⁴⁾에서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최근 수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양형기준⁵⁾에서 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음주운전 양형기준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3) 2012. 6. 18. 의결되고 2012. 7. 1. 시행된 내용 기준
4) 2020. 4. 20. 수정되고 2020. 7. 1. 시행된 내용 기준
5) 2023. 4. 24. 수정되고 2023. 7. 1. 시행된 내용 기준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표 3〉 음주운전 양형기준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면허운전	50~150만원	~8월 or 100~200만원	6~10월 or 150~300만원
2	음주운전 (0.03~0.08%)	100~300만원	~8월 or 200~400만원	6~10월 or 300~500만원
3	음주운전 (0.08~0.2%)	6~10월 or 300~600만원	8월~1년 4월 or 500~800만원	1년~1년10월 700~1,000만원
4	음주운전 (0.2%~)	1년~2년 or 700~1,200만원	1년 6월~3년 or 1,000~1,700만원	2년 6월~4년
5	음주측정거부	6월~1년 2월 or 300~1,000만원	8월~2년 or 700~1,500만원	1년 6월~4년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2) 집행유예 선고 기준

〈표 4〉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1)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2)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3) 동종 전과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1)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3)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1)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4)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5) 진지한 반성 없음	1)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자수 3) 진지한 반성 4)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5)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6)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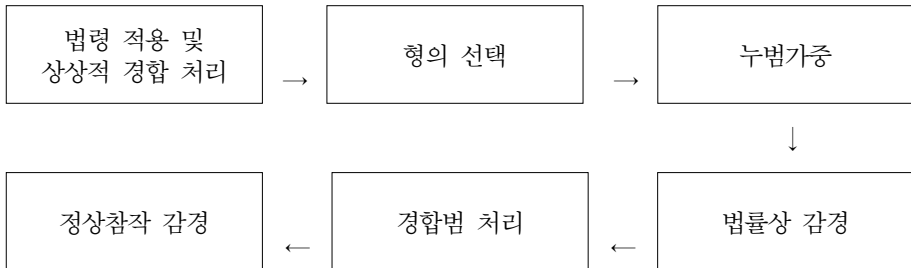
나. 법원의 선고형 결정 과정

1) 처단형 산정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재판부가 최종 선고형을 결정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처단형을 산정하는 것이다. 처단형이란 법정형을 구체적 범죄사실에 적용함에 있어서 법정형에 법률상, 재판상의 가중, 감경을 하여 처단의 범위가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를 의미한다. 가중, 감경의 순서는 형법 제56조에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처단형 산정과정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처단형 산정과정을 거치면 대강의 형량 범위가 도출된다.

2) 양형기준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형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

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이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재판부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선고형을 결정할 때 양형기준을 따르고 있다⁶⁾.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인 2023. 4. 24. 신설되기 전까지는 따로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3) 최종 선고형 결정

양형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재판부는 처단형 산정을 마친 후 그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을 범위를 적용한다. 이 때 재판부는 해당 사안의 가중·감경 양형인자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중인자가 더 많다면 가중 영역, 가중·감경인자의 수가 동등하다면 기본 영역, 감경인자가 더 많다면 감경 영역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양형기준에 따라 최종 선고형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 재판부는 처단형 산정을 마친 후 해당 사안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최근 하급심 판결 선고형 추이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음주운전은 2023. 4. 24. 이전에 따로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판부는 위와 같이 처단형 범위 내에서 유사 사례(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결합 여부,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유사성을 판단함) 하급심 선례를 참고하여 선고형을 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6) 별론으로 양형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선고형을 정할 때는 양형이유에 대하여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대부분의 판결문에서는 양형이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3. 음주운전 관련 통계자료 및 분석

가. 경찰청 통계자료

〈표 5〉 연도별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현황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고(건)	24,043	24,399	19,769	19,517	19,381	15,708	17,247	14,894	15,059
사망(명)	592	583	481	439	346	295	287	206	214
부상(명)	42,772	42,880	34,423	33,364	32,952	25,961	28,063	23,653	24,261

출처: 경찰청

〈표 6〉 연도별 음주운전 단속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단속	205,187	163,060	130,772	117,549	115,882

출처: 경찰청

나. 위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

경찰청에서 제공한 연도별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현황은 음주운전 단일범죄만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결합한 사건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일범죄를 분석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의 데이터 정합성이 꼭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 통계자료를 보면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변경되는 시점과,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변경되는 시점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년도 초반에 크림빵 아빠 사망사건, 2018년도 후반에 윤창호씨 사망사건이 터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졌는데, 분노한 여론으로 인하여 위축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변경되는 구간에는 처벌강화 등의 개정이 있었지만,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변경되는 구간은 이러한 개정도 없었음에도 사건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결론 부분에서 위 경찰청 통계자료와 본 연구의 분석자료를 비교·해석하기로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시점 및 위헌결정 시점이 전세계적인 팬데믹인 코로나 19 발생시점과 유사하므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의 가시적인 변화가 있어 변수로 작용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찰이 공개한 위 음주운전 단속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19 발생 전인 2019년 이전 통계와 발생시점 후인 2020년 이후 통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코로나 19와 관련이 없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단속이 대폭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연구분석 내용과 결합하여 결론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4. 가설설정

가. 제1 가설

입법자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개정할 의도는 형량의 증가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즉 응보론적인 관점에서만 본 개정을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방적 관점에서 도로교통의 안전과 혹시 모를 타인의 신체, 생명 피해를 막고자 하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의 강화시점 이후에 재범발생율이 억제되었다’라는 제1 가설을 설정하고, 판결문을 분석하여 위 가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나. 제2 가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규정은 2018. 12. 24. 개정되었다가 2021. 11. 2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범 가중처벌 부분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최근 2023. 1. 3.에 이르러서야 보완입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3. 4. 24.에서야 비로소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이 신설되었다⁸⁾.

7)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논의했던 제20대 국회 제36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8. 11. 20.) 회의록 9~10p를 살펴보면 당시 회의에 참여한 경찰청과 위원들 모두 누범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범율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8) 2021년 이전에는 벌금형의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었던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처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참고할 양형기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참고할 선례가 없으므로 초기 선고형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선례들이 충분히 쌓이고 난 후에는 법원 선고형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되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규정은 개정이 이뤄진 후 2년 정도의 기간이 흐른 뒤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어 효력이 일부 상실되는 등 법률의 변경이 재차 발생하였다. 또한 국회의 보완입법은 위헌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1. 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빠르게 문제점들이 봉합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최근까지 법원 선고형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판결에 적용되는 음주운전 규정이 변화한 시점마다 선고형의 표준편차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을 것이다**’라는 제2 가설을 설정한다. 제2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법률의 변화 시점 전후의 표준편차 추이를 분석하여 관찰한다. 또한 최근 10년간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선고형의 표준편차를 시계열로 나타내어 시각화 하고, 법률의 개정 시점 및 현재 위헌결정일 전후로 가시적인 표준편차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다.

다. 가설 설정의 이유와 본 연구의 목적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입법자가 의도한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재범 억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제1 가설)를 분석하고, 제2 가설 검정을 통해 입법자 의도와는 반대로 선고형 혼선이라는 부정적 결과가 도래하였는지를 검토한다. 즉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불러올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Ⅲ. 연구방법

음주운전 규정 변화가 선고형에 미친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판결문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1) 판결문 원시 데이터 가공, (2) 주요 법률 정보 추출 각 단계를 수행하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여 대량의 판결문으로부터 자동으로 정보를 추출하였다.

1. 판결문 원시 데이터 가공

판결문 원시데이터는 직접적인 글자 추출이 불가능한 이미지 파일, 혹은 글자 추출은 가능하나 글 중간에 삽입된 표, 혹은 그림들에 의해 효율적인 내용 추출이 어려운 PDF 형태로 주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Hwang et al.(2022a)에서 제안된 데이터 가공 방법을 따라 판결문 자동 가공 파이프라인을 구성 하였다. 먼저 각 판결문 페이지에 대하여 ResNet(He et al., 2016) 기반 문서 분류기를 통해 각 페이지가 글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혹은 그림이나 표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경우로 분류하고, 그림이나 표가 포함될 경우 Mask-R-CNN(He et al., 2017) 기반 객체 검출 기술을 이용해 글과 그림, 표를 서로 분리한다. 그 뒤 글자 추출이 가능한 PDF일 경우 규칙기반 파서(Parser)를 통해 글을 추출하고, 이미지 형태로 페이지가 주어질 경우 OCR 및 Transformer기반(Vaswani et al., 2017) 오타자 교정 모델을 통해 글자를 추출하여 원시데이터를 가공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 논문 (Hwang et al, 2021a)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주요 법률 정보 추출

가공된 판결문 원시 데이터는 구조화 되어있지 않은 말뭉치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뭉치로 부터 주요 법률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Transformer기반 (Ibid.) 문장 분류기 및 정규식을 이용해 주문, 사실관계, 양형의 이유, 결론 부분 등으로 판결문을 문단별로 분리하였다. 그 뒤 Hwang et al.(2022b)에서 제안한 방법을 따라 구글의 사전학습 모델 mt5 기반(Xue et al., 2021) 생성형 정보 추출 모델을 구축, 사용하여 주문, 사실관계, 양형의 이유 등으로부터 주요 정보를 추출하였다.

주문에서는 선고형의 종류, 벌금, 추징금, 징역기간, 집행유예기간, 사회봉사시간 및 기타교육수강시간이, 사실관계로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차종, 과거 음주운전 여부가, 양형의 이유로부터는 과거 동종전과 횡수, 반성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대한 정보가 추출되었다. 모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원 논문 (Hwang et al., 2021b)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통계 분석

가. 분석에 사용된 판결문 데이터

현재 법원의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사건 관련자들만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전체 판결문을 분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판결문 가공 서비스 업체인 LBox Co., Ltd.와의 협업을 통해 LBox가 보유한 판결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로 음주운전 단일범죄 판결문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2016년부터 최근까지의 음주운전 단일범죄 판결문을 대상으로 하되 그 중에서 ②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건발생일, 판결 선고일,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 횡수, 양형(벌금형 이상의 사건을 대상으로 함) 등을 파싱(parsing)할 수 있는 판결문을 선택하였다.

확보한 판결문 데이터의 건수가 연도별로 달랐기 때문에 연간 데이터가 2,000여건을 넘는 해는 2,000건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는 연도별 판결문 숫자의 편차를 줄여 연도별 요인의 왜곡을 막고자 함이다.

분석에 사용된 판결문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7〉 본 연구에 사용된 판결문 수

연도	형 분류			
	벌금	징역형	집행유예(벌금/징역)	계
2016	57	23	747	827
2017	99	51	1,738	1,888
2018	93	64	1,610	1,767
2019	134	56	1,810	2,000
2020	356	53	1,591	2,000
2021	319	109	1,572	2,000
2022	133	91	1,776	2,000
2023	68	23	1,909	2,000

나. 데이터 분류 기준 시점

1) 제2 가설 검증을 위한 구간 분류

본 연구에서는 제2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 전에 범행을 저지른 케이스(제1구간),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범행을 저질러 위헌결정 전에 판결이 선고된 케이스(제2구간), 위헌결정 이후 판결이 선고된 케이스(제3구간)로 각 구간을 구분하여 판결문 데이터를 배치시킨 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류기준과 해당구간에 속하는 판결문 정보는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표 8〉 판결문 데이터 분류기준 및 세부내용

구간	제1구간	제2구간	제3구간
분류 기준	2019. 6. 24. 이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건	2019. 6. 25.~ 2021. 11. 24. 기간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판결 선고가 된 사건	2021. 11. 25. 이후 판결 선고가 된 사건
총 사건 수	5,770	5,715	2,997
총 징역형 수	5,462	4,853	2,908
벌금형 수	308	862	89
선고형 평균			
징역형(월)	7.28	11.22	10.73
벌금형(만원)	553만	915	756
평균 혈중알코올농도(%)	0.139	0.128	0.138

제1구간에 속하는 케이스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적용되고, 제2구간에 속하는 케이스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제3구간에 속하는 케이스는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결정에 따라 일부 효력을 상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즉 위와 같이 구간을 분류한 기준은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는 케이스에 대하여 같은 구간으로 묶기 위함이다. 판결문 상단에 기재된 판결 선고일과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건발생일을 추출하여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는 케이스를 묶어 각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것이다.

2) 제1 가설 검증을 위한 구간 분류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됨으로써 재범발생율이 줄어들었는지 검증을 하고자 함이 제1 가설의 목적이므로, 제2 가설에서 적용할 구간 분류 기준을 제1 가설에도 적용해야 할 당위는 없다. 본 가설을 보다 엄밀히 검증하기 위하여 필자는 일반 국민들이 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어느 시점부터 법률의 개정을 인지하고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관한 적절한 선행연구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유효한 선행연구 결과가 존재한다면 그 연구에서 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재범발생율의 억제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과 국민들 인식 시점에 관한 적절한 선행 연구를 찾을 수 없었기에 차선택으로 개정일, 시행일 중 하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을 제1 가설 검증 기준시점으로 정하여 전·후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① 시행일은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2019. 7. 25. 많은 언론에서 ‘오늘부터 윤창호법 전면 시행’, ‘오늘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의 제목으로 다량의 기사를 쏟아냈으므로 시행일을 기점으로 상당수 국민들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 행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③ 제2 가설에서 구간을 설정할 당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제1 가설은 이와 달리 개정일로 분류하게 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분석 결과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다. 분석 방법론

1) 제1 가설

제 1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보한 판결문에서 추출한 피고인의 동종 전과횟수를 기준으로 초범, 1회, 2회, 3회 이상인 경우를 구분해 각 경우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재범 비율)을 살펴보았다. 전과횟수에 따른 재범비율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연도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3개 구간별로 각 살펴보았다.

2) 제2 가설

본 연구를 위해서 python의 통계 분석 패키지 scipy의 stats 서브 패키지와 pingouin을 사용해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앞에서 정의한 시기에 따라 3개 구간 집단별로 징역형(실형),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의 분산(표준편차)가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등분산 검정(Levene's test)⁹⁾을 수행하였다. Levene's test는 3개 이상의 집단간의 분산이 같은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Brown et al., 1974).

다음으로 3개 구간 집단 선고형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를 수정한 welch's ANOVA test(Welch et al., 1951)를 사용했으며, 사후 검정은 Games Howell's test(Games et al., 1976)를 통해 진행하였다¹⁰⁾. 아래 결과 및 해석 부분에서 정리한 표에는 각 통계 검정의 자유도, 통계량, p-value를 나타냈으며, p-value가 0.05보다 작은 결과에 대해서는 (*)으로, 0.01보다 작은 결과에 대해서는 (**)으로 표기하였다.

IV. 통계분석 결과 및 해석

1. [제1 가설] 처벌 강화가 재범발생율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가. 통계 결과

전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들 중 기존 전과횟수에 따른 비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연도별로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등분산 검정 중의 하나인 Barlett test 와 비교해 데이터의 비정규성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알려진 Levene's test를 선택했다.

10) welch's ANOVA와 Games Howell's test는 모두 분산의 동질성 가정이 위반되는 경우에 활용되도록 설계된 방법론이다.

〈표 9〉 연도별 전과횟수에 따른 비율분포

연도	전과횟수			
	초범	1회	2회	3회
2016	2,2	3,5	63,3	31,0
2017	0,8	4,1	61,6	33,5
2018	2,3	3,8	62,0	31,9
2019	3,3	18,1	51,6	27,0
2020	4,3	47,8	29,8	18,1
2021	4,2	46,6	29,6	19,6
2022	6,2	30,7	29,5	33,6
2023	5,4	30,2	29,6	34,8

(각 셀 = 해당 연도 전과횟수가 동일한 케이스의 수/분석에 사용된 해당연도 전체 음주운전 케이스의 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전과횟수에 따른 비율변화를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0〉 각 구간별 전과횟수에 따른 비율분포

구간	전과횟수			
	초범	1회	2회	3회 이상
제1구간	2,0	4,3	61,7	32,0
제2구간	4,3	44,2	30,1	21,4
제3구간	5,8	29,0	30,1	35,1

나. 해석

제1 가설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가중처벌 기준이 되는 재범 발생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전과횟수에 따른 비율을 분석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개정 이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전과 1회 재범의 비율이 오히려 월등히 증가(약 40% 증가)하였고, 전과 2회 이상인 재범만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전과가 2회인 재범의 비율: 약 31% 감소, 3회인 재범의 비율: 약 11% 감소).

전체적으로 보면 재범의 비율은 2.3%p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나, 이 수치는 제1 가설

을 지지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재범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전과 1회 재범의 비율이 월등히 증가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재범 처벌규정의 강화가 재범발생을 억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해석이 도출된다.

2. [제2 가설] 법률의 개정이 선고형의 불안전성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가. 통계 검정 결과

각 구간에 속한 사건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징역형은 실형 사안, 집행유예 사안을 분리하여 따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실형 사안과 집행유예 사안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¹⁾. 또한 벌금형 집행유예 사건은 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징역형(실형),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 각 케이스 모두 등분산 검정의 귀무 가설인 ‘모든 집단의 분산이 같다’가 기각되었으며,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welch’s ANOVA를 통해 유의수준 0.01에서 세 구간의 선고형 평균이 같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Games Howell’s test를 통해 집단간 평균 차이에 대한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징역형(실형)은 제1구간-제2구간, 제1구간-제3구간 사이에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있었고, 징역형(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경우 모든 집단간에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있었다.

11) 집행유예가 붙은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 대법원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문제된 판결에서 제1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사안을 제2심에서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벌금형을 추가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았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 7198 판결), 제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인 사안을 제2심에서 단축된 실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배제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았다(대법원 1986. 3. 25.자 86모2 결정). 위 판례들에 따르면 집행유예가 붙은 사안과 붙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수평적으로 형량 비교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형 사안과 집행유예 사안을 분리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표 11〉 징역형(실형) 사건의 구간별 평균, 표준편차, p-value 분석 결과

	평균	welch's ANOVA		표준편차	Levene's test	
		자유도	통계량 (p-value)		자유도	통계량 (p-value)
제1구간	7.8	2	199.36(**)	2.7	2	3.36(*)
제2구간	13.8			3.6		
제3구간	12.5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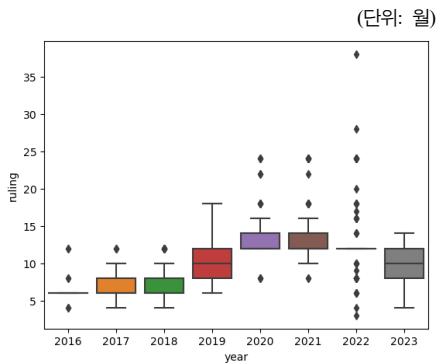
〈표 12〉 징역형(집행유예) 사건의 구간별 평균, 표준편차, p-value 분석 결과

	평균	welch's ANOVA		표준편차	Levene's test	
		자유도	통계량 (p-value)		자유도	통계량 (p-value)
제1구간	7.7	2	2901.22(**)	2.6	2	141.40(**)
제2구간	13.6			3.6		
제3구간	11.1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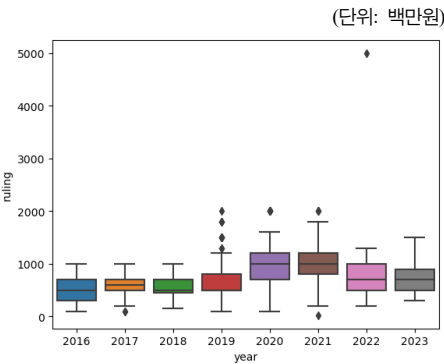
〈표 13〉 벌금형 사건의 구간별 평균, 표준편차, p-value 분석 결과

	평균	welch's ANOVA		표준편차	Levene's test	
		자유도	통계량 (p-value)		자유도	통계량 (p-value)
제1구간	559.7	2	152.08(**)	241.3	2	11.98(**)
제2구간	958.6			341.8		
제3구간	740.1			390.8		

[차트 1] 징역형(실형) 선고형 표준편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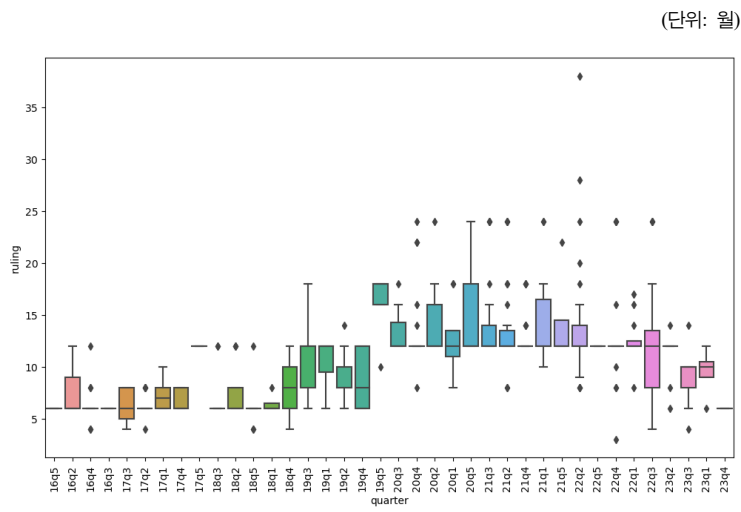
[차트 2] 벌금형 선고형 표준편차 추이



나. 시계열 차트

판결문 데이터를 연도 및 분기별 단위로 선고형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드러나도록 시계열로 나타내면 아래 차트와 같다.

[차트 3] 징역형(실형) 분기 단위 선고형 표준편차 추이



나. 해석

제2 가설에서는 법률의 변경이 선고형 혼선을 가져올 것이라 가정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위헌결정일 이후 표준편차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실제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후의 징역형(실형),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의 각 표준편차는 법률 변경시점 이후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이 관찰되었다. 즉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률의 변경이 법원 선고형의 혼선을 가져왔다는 가정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개정 후 유기징역의 형량범위가 넓어졌으므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선고형 표준편차가 증가한 것은 그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만약 정해진 구간 안에서의 표본 값이 랜덤하다면 수학적으로 표본이 속한 범위가 증가할 때 표준편차의 값도 증가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법원은 일반적으로 양형기준이 없을 때 해당 처단형 구간 내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판결 선례를 따라 선고형을 정한다. 따라서 처단형 범위 내에서 선고형 값이 규칙 없이 랜덤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값 근처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법원 선고형 결정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범위 내 랜덤한 값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형량범위 자체가 증가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표준편차가 증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체 형량범위가 변동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결정일 이후 시점에도 표준편차가 유의미하게 증가된 이유에 대하여 위 반론은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의 변경이 선고형의 일관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결국 징역형(실형),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 케이스 모두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제1구간), 시행 이후~위헌결정 전(제2구간), 위헌결정 이후(제3구간)로 진행될수록 법원 선고형의 표준편차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된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법률의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법원 선고형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항목 하단부의 시계열로 표현된 연도별, 월별 표준편차 변화 차트를 보면 이러한 변화를 시각적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 확인한 가설은 크게 두 가지였다. 제1 가설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재범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하여 재범 발생율이 감소되었는지에 관한 것이고, 제2 가설은 잦은 법률 변경으로 인한 법원 선고형의 일관성 상실 여부이다.

통계분석 결과 제1 가설에서 예상한 내용과는 다르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재범 가중처벌 규정의 형량 하한을 상당히 높였음에도 재범발생율이 질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음주운전 단일범죄 판결문 분석 결과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대부분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었는데¹²⁾, 재범 처벌강화규정은 재범 발생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처벌강화 입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재범발생을 억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 중 벌금형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재범자의 법률 준수기간이 길어지는 억제효과는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¹³⁾¹⁴⁾,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범죄 유형에 따라 선고형량이 재범억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였는데 폭력, 상해, 강도 등의 범죄에서 재범억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이 관찰되기도 하였다¹⁵⁾. 본 연구 역시 처벌의 강화가 재범발생을 억제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분석이 도출되었으므로, 처벌강화 입법이 적어도 범죄 예방적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경찰청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9년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에 비하여 4,000건 낮아진 점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전국민적인 분노여론 형성 등으로 경찰의 단속 강화가 예상되어 일시적으로 범죄 발생을 위축시켜 전체적인 사건 수 자체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처벌의 확실성이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가 존재하므로 향후 재범억제 전략을 세울 때 이를 고려

12)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들 중 95% 상당이 재범이었다.

13) 정철우, 정진성, ‘형벌의 음주운전 억제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2, 118~119쪽.

14) 다만 이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달리 구금형(징역형)에 대하여는 형벌강화가 범죄억제효과를 불러왔다고 해석하였다.

15) 최인섭, 박철현, ‘강력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993, 95~99쪽.

할 필요가 있다¹⁶⁾.

제2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법률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추이를 분석한 결과,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선고형의 표준편차가 유의미게 증가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징역형(실형),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 사건 모두 동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률의 변경(개정, 효력상실 등)은 법원 선고형의 혼선을 부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후 징역형의 전체 범위가 넓어졌으므로¹⁷⁾ 표준편차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법원의 선고형 결정 과정의 특수성 및 위헌결정일 이후의 데이터 분석결과를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지 않은 반론이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음주운전 판결문을 분석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재범억제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미흡한 개정으로 인하여 법원 선고형의 혼선만을 가중시켰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였다. 물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① 각 연도별 판결문 수를 통일시키지 못한 점, ② 음주운전 단일범죄 사건만을 분석하였고 다른 범죄와 결합된 사안에 대해서는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여 보다 깊은 분석을 진행하지 못한 점, ③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변화 등 기타 변수들을 철저하게 통제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①은 법원 판결문이 전체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현실에서 제한된 판결문 데이터만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판결문 데이터 랜덤추출 방식을 취하여 혹시 모를 데이터 편향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②의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다른 변수의 개입 가능성 때문이다. 즉 교통사고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된 사건까지 분석에서 포함시킬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통제할 수 없는 여러 변수들이 추가로 개입될 수 있으므로 변수 통제가 어려워지고 분석 결과의 신뢰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본 연구의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론을 거친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 개입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통제하여 왜곡된 해석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③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제

16) 연성진,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3, 72~73쪽

17)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형량까지 선고가 가능하였던 것에서 최대 5년 이하 형량까지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됨. 재범 처벌 역시 1~3년 징역형에서 2~5년 징역형으로 범위가 약 2배 늘어짐

공한 음주운전 단속현황 통계자료를 보면 코로나 19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통계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오히려 코로나 19와 관련이 없는 시기인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변경될 때 단속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의 발생 등으로 인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변화가 연도별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 즉 추가변수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와 비교하여 법률 개정 후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법원의 선고형이 안정화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좋은 후속 연구 주제라 생각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법원 선고형을 안정화시킨 우수 입법 케이스를 선별하는 것을 후속 연구사항으로 남겨둔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관련 입법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활용되어 원활한 도로교통과 생명, 신체에 대한 법익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연수, “음주운전 의도와 행동에 대한 억제요인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2016.
- 김잔디, “위험운전에 대한 입법적 대응: 일본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2016.
- 권보원, “음주운전 처벌법이 사회규범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 통계와 행동경제학이 주는 교훈”,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1호, 2020.
- 박동균, “음주운전 실태 및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2010.
- 연성진,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3.
- 윤영석, “음주운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이범오, 최순호, “교통범죄의 현황과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뺑소니운전을 중심으로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4호, 2021.
- 정철우, “형벌의 음주운전 억제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2.
- 전영실, “음주운전의 억제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09.
- 주현경, “기술적 범죄예방: 이의와 한계”, 고려대학교,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2013.
- 최인섭, 박철현, “강력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993.
- 황현락, “음주운전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35집, 2011.

2. 외국문헌

- Ashish Vaswani et al., Attention is all you need, NeurIPS, 2017.
- Berger, D.E. & J.R. Snortum, A structural model of drinking and driving: Alcohol consumption, social norms, and moral commitments, *Criminology*, Vol(24), 1986.
- D.E. Berger & J.R. Snortum, A structural model of drinking and driving: Alcohol consumption, social norms, and moral commitments, *Criminology*, Vol(24), 1986.
- H. L. Ross and R. B. Voas, The New Philadelphia study: The effects of severe punishment for drunk driving, *Law & Policy*, Vol(12), 1990.
- J. Yu, Punishment celerity and severity: Testing a specific deterrence model on drunk driving recidivism,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2(4). 1994.
- Kaiming He et al,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CVPR* pp. 770-778., 2016.
- Kaiming He et al., Mask r-cnn, *CVPR* pp.2961-2969, 2017.
- Linting Xue et al, mT5: A massively multilingual pre-trained text-to-text transformer. *NAACL* pp.483-498, 2021.
- L. Lanza-Kaduce, Perceptual deterrence and drinking and driving among college students, *Criminology*, Vol(26), 1988.
- Ross, H. L., & R. B. Voas, The New Philadelphia study: The effects of severe punishment for drunk driving, *Law & Policy*, Vol(12), 1990.
- S. Walker, *Sense and Nonsense*, Thomson Wadsworth, 2006.
- Walker, S. *Sense and Nonsense*, Thomson Wadsworth, 2006.
- Wonseok Hwang et al, A multi-task benchmark for korean legal language understanding and judgement prediction. *NeurIPS*, 2022a.
- Wonseok Hwang et al., Data-efficient end-to-end information extraction for statistical legal analysis. *NLLP Workshop*, 2022b.
- Yu, J., Punishment celerity and severity: Testing a specific deterrence model on

drunkdriving recidivism,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2(4). 1994.

Welch, Bernard Lewis. "On the comparison of several mean values: an alternative approach." *Biometrika* 38.3/4 (1951): 330-336.

Games, Paul A., and John F. Howell. "Pairwise multiple comparison procedures with unequal n's and/or variances: a Monte Carlo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Statistics* 1.2 (1976): 113-125.

Brown, M. B., & Forsythe, A. B. (1974). Robust tests for the equality of varianc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69(346), 364-367.

How court data reveals the impact of reformed Drinking Driving Punishment Act

- Centered on changes in recidivism rates and court sentencing -

Hyunjun Kim · Min Choi · Wonseok Hwang

Drunk driving laws are primarily aimed at protecting the safety of road traffic. However, as we are familiar with the dangers of drunk driving today, drunk driving has a very high probability of causing traffic accidents, so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act of driving drunk does not only threaten the safety of road traffic, but also poses a threat to the lives and bodies of others.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Road Traffic Act(Drink-Driving Punishment Act)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penalties for drunk driving in response to the national outrage generated by the recent death of Mr. Yoon Chang-ho. However, less than two years after the amend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aggravated punishment for recidivism was unconstitutional, and it was not until January 3, 2023, that supplementary legislation was enacted, and the drunk driving regulations have continued to change until recently.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 amendment of the Road Traffic Act to increase the penalties for drunk driving has reduced the incidence of drunk driving recidivism as intended by the legislator, or whether the frequent changes in the law have only increased the confusion of sentencing, based on court case data over the past 10 years. As a result, the statist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reforms did not reduce the recidivism rate, but only increased the sentence.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suggest that it is better to ensure that offenders are punished within the appropriate sentencing range rather than reforming the law to increase punishment blindly.

❖ Key words: drunkdriving, enhanced penalties, deterrence, recidivism, recidivism rate, sentencing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적용 - 영국 기업과실치사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김 해 경**

국 | 문 | 요 | 약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동법상의 법적 문제점 및 현실적 실효성에 관한 다툼이 진행 중이다. 즉, 제정 이전부터 시행 이후까지 법적 성격, 구성요건의 명확성, 의무범위의 구체성, 처벌의 과중문제 등 끊임없는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이후 다스간의 중대재해사고가 감소하였다면 법의 제정 목적이 실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니와 반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하기도 모호하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보다 15년이나 앞서 기업과 실치사법을 시행하여 온 영국에서조차 동법의 입법목적의 실현여부에 대하여는 비판이 더욱 크다.

여기에서는 우선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과 영국의 중대재해 발생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행위주체로서 기업, 사회사와 모회사의 책임귀속 문제, 단일 사고에 대한 다수 기업의 처벌가능성 등에 관한 영국의 사례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우리 법제 해석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이 형사특별법이 아닌 안전·보건에 관한 행정법이라는 점, 행위주체로서 기업의 대표자 해석, 양벌규정의 해석문제와 50인 미만 사업장예의 확대적용 문제 등을 영국사례와 비교하여 해결해보고자 하였다.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산업재해와 관련되어 요구되는 규범의 범위를 확장시키지만, 예측불가능한 위험요소의 증대는 관련 법으로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업에게 요구되는 의무의 범위는 넓어지고, 안전확충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경제적 규모로 인하여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러나 헌법이 근로를 의무이자 권리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유지는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발전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OECD 국가 중 국가산재사망률 1위의 민낯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마지막 희망카드라면, 해당 카드가 공수표가

* 본 논문은 2023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한중해사법연구센터·경찰청 공동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발표에서 토론을 맡아주신 강우예 교수, 도규엽 교수, 경찰청 박근국 경감님 및 심사를 통해 조언을 해 주신 심사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법학박사

되지 않도록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3.12.31.4.63>.

❖ 주제어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법인처벌, 양벌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기업과실치사법

I. 들어가며

많은 진통과 논란을 겪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약칭)은 제정 과정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¹⁾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²⁾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³⁾ 등 관련 다수의 의안발의안들이 법제사법위원장의 대안 발의로 반영폐기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 해석이나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등이 여전히 다투어지고 있다. 또한 3년 유예에 관하여도 비판은 여전하다. 지난 2년간 시행 경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로서 요구되는 이행의무가 완전하게 확립되고, 그와 같은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법 제정이전보다 중대재해가 실질적으로 감소하였음이 확인될 때에만, 비로소 그 확립된 구체적 법체계와 시행 경과를 바탕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 시행 2년간 중대재해 발생규모는 그리 형편이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는 점은,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나 구성요건 자체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확실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나아가 동법의 직접 적용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함을 지나쳐서 대체로 소극적이라는 평이 적지 않다. 그와 같은 배경에는 동법의 구성요건상의 행위주체에 관한 명확성의 원칙 위배 문제,⁴⁾ 처벌양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 위배 문제,⁵⁾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약칭)과의 관계 설정 문제⁶⁾ 등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1) 강은미 의원 등 14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2100377]”.

2) 임이자 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2106019]”.

3) 박범계 의원 등 12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2106436]”.

4) 행위주체의 명확성 요청에 관하여는 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도서출판 새빛, 2022, 61면; 송인택 외 4인, 중대재해처벌법해설과 대응, 박영사, 2022, 55면;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2, 111면; 조흥학,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에 관한 고소”, 노동법논총 제53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1/12, 3면 이하 등.

5) 임우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20/12/2, 61면 이하.

6) 박채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처벌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제56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2/12, 103면 이하; 오대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상 쟁점에 관한 소고”, 법조 제71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법이 본질적으로 형사특별법⁷⁾인지 행정법⁸⁾인지 조차도 여전히 다투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들과 적용에 있어서 치열한 논쟁들은 낫설지 않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15년 앞선 2007년 영국이 “기업과실치사법(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을 제정하고 2008년 4월 6일부터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들이 부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역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담당자나 경영진의 부주의 및 범의를 성립요건으로 하여 산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지만 그 자체로서 기업의 안전의무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는 반성적 조치로서 기업에 대한 과실증명으로 소위 ‘상한 없는 벌금’을 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정비한 것이다. 또한 양형기준에 있어서 종합적·망라적 방식이 아닌 우리와 동일하게 점진적·개별적 방식을 취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이미 최초 정비 이후 2016년의 재정비를 통해 상한 없는 벌금의 구체적인 양형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⁹⁾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적용 시행을 목전에 두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관하여, 영국의 그간의 기업과실치사법의 해석과 양형 및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적용 전후의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및 원인별 분석을 살펴보고(Ⅱ) 이와 관련하여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에 있어서 해석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실제 적용사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Ⅲ). 또한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치사상죄의 법적 성격과 행위 주체 문제,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및 동법의 확대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Ⅳ).

권 제4호, 법조협회, 2022/8, 335면 이하 참조.

7) 박채은, 앞의 논문, 117면. 김재윤, “형사법적 관점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발전방향”, 형사법연구 제34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22/9, 200면은 동법의 성격을 “보다 강력한 국가형벌권을 통한 문제해결”의 시도라고 보아 형사특별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

8) 오대영, 앞의 논문, 327면.

9) 자세한 내용은 김혜경,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요인 분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6, 33면 이하 참조.

II. 영국의 중대재해발생 현황

1. 중대재해 발생 경과

다음은 1974년부터 지난 40년간 영국의 연간 중대재해 발생 규모이다.¹⁰⁾

년도	피해규모	년도	피해규모	년도	피해규모
1974	651	1991/92	368	2008/09	179
1975	620	1992/93	339	2009/10	147
1976	586	1993/94	296	2010/11	175
1977	524	1994/95	272	2011/12	171
1978	499	1995/96	258	2012/13	150
1979	492	1996/97	287	2013/14	136
1980	440	1997/98	274	2014/15	142
1981	495	1998/99	253	2015/16	147
1982	520	1999/2000	220	2016/17	135
1983	513	2000/01	292	2017/18	141
1984	498	2001/02	251	2018/19	147
1985	471	2002/03	227	2019/20	111
1986/87	407	2003/04	236	2020/21	142
1987/88	445	2004/05	223	2021/22	123
1988/89	609	2005/06	217	2022/23	135
1989/90	475	2006/07	247		
1990/91	433	2007/08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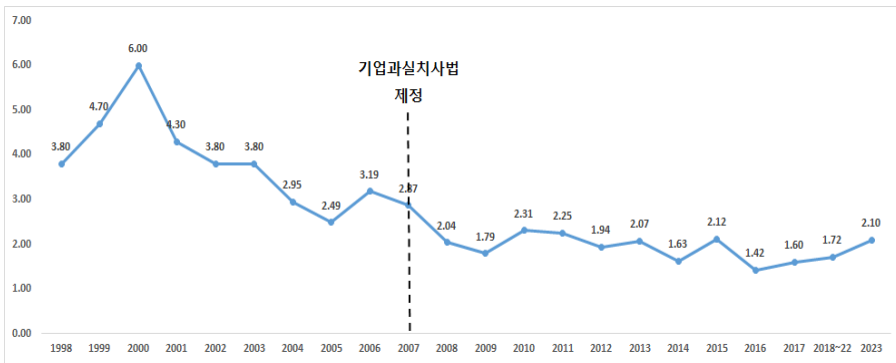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500명을 상회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1991년까지 항상적으로 400명 대를 유지하면서 1980년대 평균적으로 매년 486명 정도의 사망자를 내었다. 그러나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망자 수가 200명대로 감소세를 유지하여, 평균적으로 매년 285명 정도의 사망자를 넘으로써 평균 100명 정도의 사망자

10) Number of fatal injuries to workers in Great Britain from 1974 to 2021,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92272/fatal-injuries-at-work-great-britain-by-employment-y-on-y/>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그 이후 2021년부터 2023년을 추가하여 재정리한 표이다.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에도 지속되었으며 2000/01년부터 2009/10년까지 10년간 매년 평균 약 2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함으로써 1990년대보다 매년 평균 60명 정도 사망자가 줄어들었다.

주목할 점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과 시기적으로 일치하여 피해규모가 전년 대비 76.8%로 감소되어 건수 자체도 100건 대로 진입한 부분이다. 2007/08년 233건에서 그 다음 해에는 147건, 그리고 그 이후 약 15년간 소폭의 증감을 지속하다가 2019/20년, 즉 코로나-19 시기 바로 직전에는 111명으로 2007/08년 대비 47.6%로 절반 이상 감소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효과인가 여부에 대하여서는, 영국 내에서도 논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연간 산업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항상적으로 많은 건설산업 영역을 기준으로 1998년도부터 2023년까지 근로자 10만 명당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제정 전 10년간에는 연평균 2.6% 감소율을 보였다가 제정 이후 15년간, 즉 2008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약 3.3%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중대재해 감소폭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정 이후부터는 인구 10만 명당 약 2명 안팎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2018-2022년까지 평균은 1.72로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이후의 통상적인 평균에 가까웠으나, 2022/23년에는 다시 2.10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는 제정 전후의 법률 시행에 의한 영향으로

감소율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 1980년대 초반부터 중대재해 발생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고, 이러한 지속적인 감소세의 자연적 결과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¹¹⁾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사고에 대하여 산업보건안전법(HSWA)와 기업과실치사법 적용이 이분화되어 있어서, 실제 기소가 어떻게 되는가 여부에 따라서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 비율은 차이가 있게 된다. 실제 산업재해발생과 기소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에 따르면 산업재해에 대하여 대부분은 산재영역으로 분류하여 실제로 기업과실치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 즉시 경찰의 수사권이 보건안전청으로 이관되고 산업보건안전법이 적용된다.¹²⁾

2. 최근 중대재해 발생현황

가. 영국의 2022/23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영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조사대상 사고발생기간을 4월부터 익년 3월까지로 변경하였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중대재해 발생건수는 135건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33명으로 2021/22년 대비 유사한 비율이고, 가장 많은 연령대는 16-59세 사이로 99명에 달하였다.¹³⁾ 사고원인으로는 낙상이 가장 많은 40건이었고, 물체나 추락물 등예의 충격이 29건, 차량접촉사고가 20건이었고 그 외에 무너지는 것 등예의 갑힘 사고 12건, 작동하는 기계에 의한 접촉사고 9건 등이었다.¹⁴⁾ 낙상의 경우 2018년부터 5년 평균보다 5건 증가하였으나 차량접촉사고는 오히려 5건 감소하였다. 반면 추락물 등예의 충격은 평균보다 가장 많은 9건이 증가하였고, 그 외에는 평균과 거의 유사한

11) Jocelyn Ledward, Corporate manslaughter: more and larger companies are due to pay the penalty, 1-2면 참조.

https://www.qebholliswhiteman.co.uk/cms/document/nfdc_corporate_manslaughter.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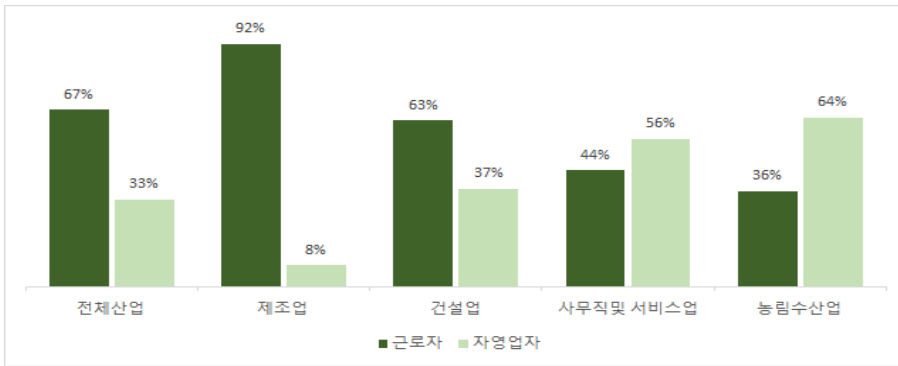
12) 시사저널, “영국 현지 취재: 기업살인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줄일 수 있다?... 팩트체크 5문5답”, 시사저널 1580호, 2020/1/22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716>.

13) 이하의 통계내용은 영국 산업안전보건청이 발간한 HSE, Work-related fatal injuries in Great Britain, 2023, Annual statistics, HSE, 2023/7/6을 인용하였다.

14) HSE, Work-related fatal injuries in Great Britain, 2023, Annual statistics, HSE, 2023/7/6,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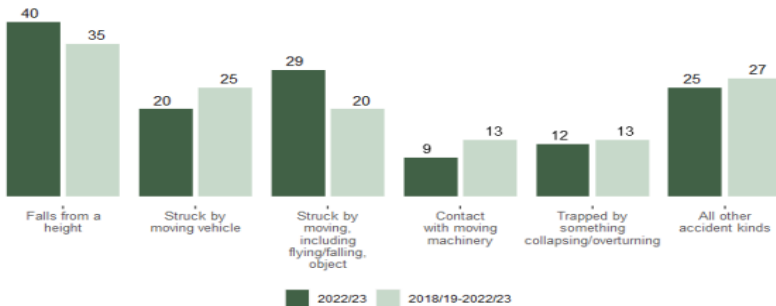
건수를 보였다.¹⁵⁾ 중대재해 비율로는 사망자의 30%가 낙상 또는 추락에 의한 사고였으며, 차량접촉사망사고는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였고, 추락물 등에의 충격은 약 21% 정도에 이른다.

영국은 중대재해 통계에 있어서 자영업자(사업주, self-employed)를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는 바, 전체 사업장 규모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은 15%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발생율은 33%에 이르고 있다.¹⁶⁾



산업별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치명상 비중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노동인구의 상대적 구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18/19년도부터 2022/23년도까지 5년간 농림수산

1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SE, Work-related fatal injuries in Great Britain, 2023, Annual statistics, 11면.

16) HSE, Work-related fatal injuries in Great Britain, 2023, Annual statistics, 14면. 표의 출처도 또한 같다.

업과 사무/서비스직에서 중대재해 절반 이상이 자영업자가 각각 64%와 56%로 모두 높았으며, 이는 건설업 37% 및 제조업 8%와 대조된다. 다만, 업종별로 자영업자의 중대재해 비율의 차이는 근로자 치명상 비율과의 상관성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5년간 자영업자 중대재해율은 고용율의 약 3배 수준으로 업종별 차이를 보였으며, 자영업자의 증가율은 특히 농림수산업과 사무/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자영업자의 치명상률은 근로자의 각 2배, 4배 정도이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양자 간의 치명율의 격차가 더욱 크다.

나. 코로나 여파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변화

영국에서는 2021/22년 노동시장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에의 영향 여부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¹⁷⁾ 이는 코로나 발생 원년인 2020/21에 142명으로 그 전해보다 30여명이 증가하였다가 2021/22년에는 123명으로 다시 감소된 통계가 코로나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노동시장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감소하는 동안 여전한 혼란과 보건 및 안전통계에의 지속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고, 산업재해로 인한 근무손실일수 및 손실비용을 재집계하도록 하였던 바 이는 주로 손실된 산정 과정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의 일시 변경때문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 범죄조사 업무 관련 통계의 중단이 계속되어 마지막 통계자료가 2019/20년도를 끝으로 유실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20/21년도와 2021/22년도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도입된 일시해고와 같은 임시 고용제도로 인하여 단기 근로자 수가 예년보다 증가하였지만, 건강악화율의 고용분모는 개념적으로 부상율과 다르므로, 일시적 해고로 인한 근로자 비율 증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사망률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 19환자 사망진단서에 직업성 질병 기록 누락으로 인한 전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컨대 코로나 19 감염자로서 직업성 질병 보유자는 그렇지 않는 자에 비해 조기사망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¹⁸⁾ 즉, 2020/21년도의 중대재해 사망건수가 전년도 111명에서 142명으

17) HSE, Technical report,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on the interpretation of Health and Safety Statistics 2021/22, HSE, 2022/11/23 발행.

18) HSE, Technical report,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on the interpretation of Health

로 상당히 높아진 이유가 단순히 중대재해 발생건수의 급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Ⅲ. 기업과실치사법의 주요 처벌사례

1. 법제적 차이점

가.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배경

영국의 경우 기업과실치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안전사고의 발생에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the Health and Safty at Work Act 1974)과 보통법(Common law)의 적용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위반 시에는 제33조에 의하여 법인이나 개인사업주에게 벌금형을 부과하였다. 또한 이사나 경영자 등의 동의 또는 묵인이나 과실로 인하여 법인의 의무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에 의하여 “해당 이사나 경영담당자(any director, manager, secretary or other similar officer of the body corporate or a person who was purporting to act in any such capacity)”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에 더하여 보통법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개인 “중과실치사죄(manslaughter by gross negligence)”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많은 사상자를 낸 Southall 철도사고¹⁹⁾처럼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and Safety Statistics 2021/22, 14면.

19) “Southall 사고는 1997년 9월 GWT(Great Western Trains)가 운영하는 고속 여객열차의 운전자가 시속 125마일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간선을 횡단하는 화물열차와 충돌하면서 발생하였으며, 사고결과로 7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치상에 이르렀으며, 약 천만 파운드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동 사고에 대하여 여객 열차가 빨간색 신호를 통과했는지 아니면 녹색 신호가 잘못 표시되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조사가 시작되었고, 보건안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앞 선로에 있는 화물열차의 두 신호 경고에 운전자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운전원이 신호를 놓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가 ‘졸았을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동 열차에는 두 가지 안전 시스템이 있었는데 제대로 작동하고 사용했다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나, 기본 자동 경고 시스템(AWS)과 보다 발전된 자동 열차 보호(ATP)가 있었지만, 운전원이 사용법을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AWS가 고장 났고 ATP가 꺼졌을 뿐만 아니라 보조운전원조차 탑승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운전원 개인의 독자적이거나 개별적인 과실이 아니라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보통법상으로는 법인의 관련 의무와 경영진의 의무는 분리된 것이고, 이사 등 경영자 개인의 의무란 개인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로서, 해당 의무위반에 대한 중과실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과실의 인정에는 개인의 관련의무 존재 - 의무위반 - 의무위반과 치사상결과 간의 상당한(substantial) 인과관계-위반이 제반 정황 하에 범죄에 이를 정도의 중과실이라는 일련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다수의 개인이 사고와 관련될 경우 모든 관여자의 의무위반의 총합으로 발생된 결과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법인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Southall 사건²⁰⁾ 역시 법인의 중과실치사죄에 관하여, 회사를 지배하는 자(‘controlling minds’)의 중과실 인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동일성이론으로 인하여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즉, 종업원은 단순한 손(hand)에 불과하므로 기업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기업대표자는 ‘controlling minds’에 해당하므로 그의 중과실 입증 있어야 철도회사라는 법인에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²¹⁾

이러한 동일성 이론에 의한 접근으로 인해 기업의 정신을 지배하는 자의 의무위반이 입증되어야만 기업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지속적인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었고, 1997년 당시 집권당인 노동당은 관련 법의 제정을 공약으로 하였고, 그 후속조치로서 2005년 3월 기업과실치사법의 공표가 이루어졌으며, 동 법안이 2006/7/20일 하원에 상정되어 26일 공포된 것이다.

나. 법제 및 적용상 차이점

영국의 동일성이론은 법인처벌의 근거로서 우리 법제와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의 시스템의 실패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중과실치사라는 관습(형)법 위반에 기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GWT 기소는, 그것을 회사의 경영진의 중과실로 입증할 만큼 회사를 지배하는 자들(controlling minds)이 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어서 실패하였다.” The Open University, 3.2 The history of corporate manslaughter prosecutions in the UK, <https://www.open.edu/openlearn/money-business/corporate-responsibility-industrial-incidents/content-section-3.2>

20) R. v. Great Western Trains Company Limited(1999년 7월 27일)

21) 동일성이론에 관하여는 송기동, “영미 기업범죄 형사책임의 전개”,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12, 50-55면 참조.

하고 이처럼 동일성 이론의 한계가 기업과실치사법을 독자적으로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다. 따라서 동일성이론은 법인처벌의 한계이자 기업과실치사법 제정의 근거이다. 이로써 경영자 개인 범죄에 종속함이 없이 법인의 구성 및 운영에의 의무위반이라는 독립된 구성요건을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의 결과에 이르면 그 자체로서 완전한 기업의 범죄성립이 인정된다.

반면 기업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기업처벌의 특별규정인 양벌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책임주의 원칙을 근거로 위헌결정을 한 이후에 기업처벌은 반드시 기업의 선임·감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여야만 한다.

나아가 영국은 영미법에 존재하는 유죄인정(Guilty Plea)에 의하여 감형가능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대재해에서 기업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음으로써, 실제 판결에 있어서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첫째, 기업이 유죄를 인정한 이상 검찰이 기업의 의무위반과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성 판단의 부담이 제거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사실관계 판단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은 즉 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사실인정에 있어서 핵심사항으로 대두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인행위와 근로자사망사이에 3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입증 판단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2021년 R v Wood Limited Treatment 사례²²⁾를 제외하고는 모두 1심(Crown Court)에서 종결되어서, 현재까지 대법원 판결이 전무하다.

둘째, 유죄인정을 한 기업에게는 감형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인하여, 법률상 ‘상한없는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무색할 정도로 형량의 결과가 경미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은 기업규모에 따라 4개로 벌금형의 구간을 나누고, 가중 및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제 적용된 형량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²³⁾ 물론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을 받은 후에 파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규모의 기업에는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22) [2021] EWCA Crim 618 Case No: T20197350

<https://www.bailii.org/ew/cases/EWCA/Crim/2021/618.html>

23) 영국의 기업과실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혜경,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요인 분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3면 이하 참조.

없었다.

2. 자회사 중대재해에 대한 모회사 처벌가능성: 2015년 CAV Aerospace Ltd 사건²⁴⁾

가. 사실관계

2013년 1월 26일 케임브리지 공항에 있는 작업장으로 배달된 금속 더미가 쓰러지면서 47세의 Paul Bowers 위를 덮쳐서 사망하였다. 조사결과 붕괴원인은 적재량 초과와 공간 부족에 따른 안전 높이 제한을 초과한 채 빌릿을 안전하지 않게 보관한 점이었다.²⁵⁾ CAV Aerospace는 더런 부 콘셋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회사이고, 그 자회사인 CAV Cambridge가 운영하는 현장인 케임브리지 공항에서 동 사고가 발생하였다. 모회사인 CAV 에어로스페이스는 자회사인 케임브리지 부지 임대 등 자회사의 보증인 역할을 하였고, 자체 자금으로 부지의 기계를 구입하였다.²⁶⁾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자재 구매, 배송, 보관 관련 모든 운영과 관련한 결정은 모회사가 행한 것이었다고 한다. 조사결과 케임브리지의 관리자들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전 3년 동안 CAV 에어로스페이스의 고위 경영진들과 함께 자재 더미의 추락 위험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고를 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건 및 안전 이사는 MC Farlane에게 빌릿이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강력한 용어로 경고했다. 가장 명백한 해결책들 중 일부는 비용 문제로 거부되었고 CAV 에어로스페이스는 CAV 캠브리지의 직원들에 대한 배려의무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HSE는 6개의 거의 모든 실수가 회사의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되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24) 본 사례는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해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례분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년 연구보고서 중 발표자가 작성한 59-61면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25) R. v CAV Aerospace Ltd unreported 31 July 2015 (Central Crim Ct)

26) 자회사는 어떤 주문을 받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를 하지 않았고, CAV 캠브리지의 유일한 이사는 가끔 회사 이메일을 무시하였고 모회사 이사도 종종 CAV 캠브리지의 총지배인으로부터 온 이메일을 무시하여 왔다.

나. 재판결과: 모회사 기소 이유

검찰은 자회사가 아닌 모회사를 기업과실치사죄와 산업보건안전법 Sec. 3(1) 및 Sec. 33(1)로 기소하였다. 산업보건안전법 Sec. 3(1)이 적용된 이유는 위험이 모회사 자신의 직원이 아닌 자회사의 직원이었기 때문이다.²⁷⁾

모회사인 CAV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죄인정을 하지 않았고, 유죄판결을 통해 28일이 이내에 동시에 지불해야 하는 벌금으로 기업과실치사죄로 인한 벌금 600,000 파운드와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400,000을 부과하였다. 또한 125,000 파운드의 소송비용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였다.

본 판결에서 자회사가 아닌 모회사가 벌금을 부과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관리 구조 면에서 과잉 재고의 문제는 CAV케임브리지에 의해 확인되었지만, CAV에어로스페이스의 참여 없이는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없었다. 구매주문, 납품 등의 사항은 모회사가 책임지는 경영구조였고, 결과적으로 자회사는 발언권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자회사는 자체 재무부서가 없어서 회사의 재무운영은 지배기업인 모회사가 맡았고, 자회사의 의사 결정 독립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지배기업인 모회사와 종속기업인 자회사의 분리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둘째, 사건 이전에도 CAV에어로스페이스에 기록된 6건의 근접 누락보고가 있었고 그 중 어떠한 것도 조치나 위험성평가가 취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모회사인 CAV에어로스페이스가 “명백하고 명확하며 반복적인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모회사를 기소하였다.

셋째, CAV 에어로스페이스는 임상시험에서 개선 기준이 적용 가능한 기준에 미달하고 심각한 부상이 예상된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경고와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를, 자신들이 CAV케임브리지 직원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그와 같은 안전의무는 자회사 책임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자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단순한 견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모회사(지배기업)가 자회사(종속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27) http://www.cps.gov.uk/news/latest_news/cav_aerospace_ltd_convicted_of_corporate_manslaughter/

지는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²⁸⁾ 즉, 종속기업의 경영진과 종속기업의 운영상 또는 재무상 의사결정이 지배기업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재무지배력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지배기업이 종속적 수준에서 작업조건을 가시적으로 파악하거나 제어 조치와 관련한 하자를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것들이 자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배기업이 보건과 안전 기능을 감독하고 있는지 여부, 모회사가 자회사와 같은 업종인지 여부, 모회사가 특정 산업의 보건 및 안전 관련하여 우수한지 여부, 모회사 수준과 자회사 수준의 이사들 사이에 중첩이 있는지 여부, 모회사가 그룹 단위로 적용하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그것이다.

다. 양형고려요소

판사는 궁극적으로 비용절감을 사고 악화 요인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다만 가중요로서 위험방치의 긴 기간, 안전의무위반의 수준 및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한편 감경(완화) 요소로서는 수사협조, 시정조치, 사망자 가족에 대한 보험금 이상의 손해배상 지불, 우수한 안전 관련 기록 등을 고려하였다. 특히 많은 완화 요인이 고려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회사가 새로운 근무 시스템을 위반한 직원들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가장 중징계는 해고)를 내렸다는 점과 근무 관행에 중대한 변화를 가하였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고, 사망한 바우어스의 유족들에게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고 사망자와 그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손해나 기타 지급에 추가하여 지불하였다. 그리고 회사가 그 이전에는 아무런 사전 기소나 강제 조치를 받은 바 없이 양호한 보건 및 안전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또한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있다는 점과 보건과 안전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교육을 받았으며, 고위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보건과 안전에 대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좋았다는 점에 양형감경의 요소로 고려되었다.

다만 기업과실치사에 부과되는 양형위원회 지침에 따라 50만 파운드 미만이 될 수는

28) Burges Salmon, Parent company liable for safety breaches of its subsidiary, 2015/12, 1면 https://www.burges-salmon.com/-/media/files/publications/open-access/parent_company_liable_for_safety_breaches_of_its_subsidary.pdf

거의 없었고, 법원은 다만 회사의 규모가 큰 반면 당시로서 수익이 크지 못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 외에 공표명령이나 시정명령은 부과되지 않았고,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라. 시사점

최근 SPC 그룹의 계열사인 사니에서 끼임사고로 인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동 그룹 계열사의 근로자 사망사고는 2022년 10월 경기도 평택시 소재 SPC 제빵 공장에서도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SPC 그룹이 아닌 그룹계열사 SPL 대표이사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당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는 수사전담팀 구성을 통해 압수수색 진행 결과,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제빵공장 공정의 기본적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끼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검찰은 송치 이후 10여개월이 지난 올해 8월에야 비로소 SPL 공장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 SPL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SPL 대표이사의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이행, 안전보건교육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등 세 가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을 근거로 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는 위험작업 방지, 2인 1조 등 적절한 인원 배치 불이행 등을 근거로 하였다.²⁹⁾

그러나 동 사건에서 문제된 바는 SPC계열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다. 검찰은 SPL은 별도의 법인으로서 해당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및 사업전반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므로 그룹의 대표를 경영책임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자회사의 중대재해사건에 대하여 모회사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이 판결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모회사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조계의 기준까지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29) 매일노동뉴스, “강동석 SPL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2023/08/25,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66>

SPC 그룹의 경우 계열사에서 지난 4년간 치사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건수가 759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³⁰⁾, 계열사들은 독립적 재무구조와 경영판단권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이 타당한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의 지분과 투자가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독립경영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3. 단일의 중대재해에 대한 다수 기업의 처벌가능성: 2017년 Koseoglu Metal works Ltd 사건³¹⁾

가. 사실관계

Firat와 Ozgur Ozdil이 친구 Kadir Kose와 그의 회사 Koseoglu Metal Work를 고용하여 Ozdil Investments가 소유한 Ozdil House 창고의 지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산업보건안전청(HSE)와 Harlow District Council은 Ozdil Investments에게 수리 작업과 관련된 위험과 추락방지 그물망과 같은 안전 조치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경고했지만 Firat와 Ozgur Ozdil은 Kose와 Koseoglu Metal Work에게 그러한 예방 조치없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³²⁾

그 결과, 2015년 63세의 Nikolai Valko가 Ozdil 건물 지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변색된 채광창을 밟은 후에 땅에 떨어졌고, 심각한 머리부상을 입은 후 이송되었으나 병원에서 사망하였다.³³⁾ 당시 채광창이 있는 지붕은 흙과 이끼로 덮여 있었고, 안전망이나 하네스, 안전모, 사다리 등도 없었다.

30) 뉴스로드, “사람목숨 바쳐 빵 굽나... SPC, 4년간 산재사고 759건”, 2023/9/6, <http://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46>

31)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64-66면 인용.

32) Health and Safety Executive v Koseoglu Metal works Ltd, 19 May 2017 (Crown Ct (Chelmsford))

33) HSE, Defendant details - Koseoglu Metal Work Limited, https://resources.hse.gov.uk/convictions-history/defendant/defendant_details.asp?SF=DID&SV=4396286

나. 재판결과

Essex에 본사를 둔 부동산 회사인 Ozdil Investments Limited의 이사 Firat Ozdil과 Ozgur Ozdil과 건축 금속 세공 회사 Koseoglu Metal Work Limited의 단독 이사 Kadir Kose는 2015년 4월 Essex의 창고에서 Nikola Valkov가 사망한 후 산업보건안전법 Sec. 37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또한 회사 Ozdil은 기업과실치사죄와 산업보건안전법 Sec. 3(1)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회사 Koseoglu는 기업과실치사죄와 산업보건안전법 Sec. 2(1)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2016년 9월 첼름스 포드 크라운 법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Koseoglu Metal Work는 유죄인정을 하였다. 동 회사의 이사 역시 유죄인정을 하였다. 반면 Ozdil Investments와 해당 이사는 범죄사실 인정을 거부하였다. 2017년 2월, 4주간의 재판 끝에 두 기업과 이사들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Ozdil Investments는 기업 과실 치사 범죄로 500,000 파운드, HSWA 위반에 대해 160,000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55,115.34의 기소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Koseoglu Metal Work는 기업 과실치사 혐의로 300,000 파운드, HSWA 위반으로 100,000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21,236의 기소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Ozdil Investments Limited의 이사 Firat Ozdil은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Ozgur Ozdil은 10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Koseoglu Metal Work의 단독 이사 Kadir Kose는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3명 모두 10년간 회사의 이사 자격을 박탈당하였다.

다. 양형고려요소

법원은 철강계단 및 발코니와 같은 건축금속세공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Koseoglu 회사가 루핑 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점과 Kose가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점 및 고용한 직원을 교육 없이 현장에 보낸 점을 확인하였다.³⁴⁾

34) British Safty Council, Safe Management, 2017/5/23, <https://www.britsafe.org/publications/safety-management-magazine/safety-management-magazine/2017/three-directors-jailed-over->

두 회사 모두 기업규모는 양형기준 2단계상 기업규모는 영세기업(Micro organisation)에 해당하며, 위반범주 카테고리는 A에 해당하였으므로 450,000 파운드가 시작지점이었다. 따라서 카테고리 범위는 £270,000 – £800,000 내에 있었다. 그러나 Ozdi의 벌금은 시작지점보다 높았지만 카테고리 범주 안에 있어서 양형기준에 부합하였다. 법원은 회사와 이사들이 산업안전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평가, 서류작업, 비계, 주행라인, 안전보드, 하네스 및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그들이 근로자 사망하였을 당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하였다.

라. 시사점

하나의 중대재해 사고에 대하여는 특정 기업의 경영자 등의 책임을 고려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발주자와 도급인의 관계인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과하지만 사업주나 법인 등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사례는 발주자는 부동산회사로써 직접 시공하는 도급 또는 용역회사와는 법인 자체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법인 모두에게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하였다. 만일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와 같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책임의 귀속을 판단한다면 관련 법인 모두에게 동법을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실질적”이라 함은 동등하게 책임을 분담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어느 일방에만 책임이 귀속되도록 하는 문언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의 산업보건안전청과 지역법원은 부동산회사에게만 수리 작업과 관련된 위험과 추락방지 그물망과 같은 안전 조치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공 법인까지도 안전의무위반에 의한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하였다. 여기에서 시공 법인이 아닌 도급(위탁)을 행한 법인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이행경고를 한 점, 안전조치의무 이행경고에 대한 위반의 책임을 부과한 점은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서 의무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주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대재

해처벌법의 비판 중 일부는 의무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그것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 책임귀속자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³⁵⁾을 지적하나, 관련 감독기관이 구체적으로 의무를 사전에 적시하고 경고를 행함으로써 의무위반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형참사에 대한 기소의 부담: 2017년 Grenfell Tower 화재사건³⁶⁾

가. 사실관계

최근에 영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2017년 Grenfell Tower 화재사건의 경우, 72명이 해당 사건으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형사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7년 9월 19일 런던의 23층짜리 그렌펠 타워는 화재로 전소하였고, 해당 화재를 조사하였던 경찰은 개인들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뿐만 아니라 그렌펠 타워를 운영하던 기업조직에게 기업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³⁷⁾

당시의 공개조사에 따르면 막을 수 없는 화재 확산의 핵심 원인은 당시 보수 공사 중에 타워의 외벽에 장착된 가연성 피복 시스템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조사의 의장을 맡았던 Martin Moore-Bick 판사에 따르면, 청문 당시 증인으로서는 보수공사의 주계약자인 개인 소유의 회사 Rydon Maintenance Ltd의 전·현직 직원들 및 피복재를 취급하는 하청업체인 Harley Facades Ltd, 해당 건물의 세입자들을 관리하던 Kensington and Chelsea Tenant Management Organisation (KCTMO) 등이었다. 증인들은 조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술한 그 어떤 것도 자신에 대한 기소를 촉진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요구하였다.³⁸⁾

35) 김영국,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법정책 과제-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의 관점에서-”,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한국입법학회, 2021, 121면; 오대영, 앞의 논문, 342-344면 등.

36)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69-71면 인용.

37) In Grenfell Inquiry, U.K. Weighs 2 Types of Manslaughter Charge
<https://www.nytimes.com/2017/09/19/world/europe/uk-grenfell-manslaughter.html>

38) REUTERS, Witnesses seek protection from charges over London's deadly Grenfell fire, 2020/1/29, <https://www.reuters.com/article/us-britain-fire-grenfell-idUSKBN1ZS1TS>

해당 건물은 켄싱턴 자치구와 첼시 자치구가 소유한 사회주택으로, 일부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인종차별을 받는 저소득층 공동체라는 점에서 공식적인 무관심이 비극에 일조하였으며, 건물에 화재위험이 있다는 주민들의 경고가 무시되었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조사 경과

2021년 12월 경찰은 해당 타워 보수의 중심이 된 최대 36개 업체의 역할을 조사하고, 자연성 외장재와 단열재의 설치 등에 있어서 인과성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화재와 관련하여 범죄혐의를 고려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결론지어지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지만,³⁹⁾ 현재도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문과 조사는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그린펠 타워 조사팀은 2023년에도 매월 조사내용을 공식적으로 발간하고 있다.⁴⁰⁾

2022년 4월 이후에는 화재 직후 지방 및 중앙 정부의 대응을 조사하는 바, 중대재해 처벌법과 마찬가지로 정부기관 역시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대상이다.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이미 2단계 보고서 작성이 진행되고 있고, 1단계에서는 20,784건의 문서, 2단계에서는 299,641건의 문서를 공개하여 현재 320,425개의 관련 문서들이 해당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⁴¹⁾ 또한 사건 관련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청문회 후의 지원 조치로서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다. 시사점

동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사건조사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조사내용과 결과를 매월 단위로 업로드 함으로써 사건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조사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조사가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일

39) BBC, Grenfell Tower survivors say criminal charges are taking too long, 2021/12/14
<https://www.bbc.com/news/uk-england-london-59657356>

40) Grenfell Tower Inquiry, <https://www.grenfelltowerinquiry.org.uk/news/march-2022-newsletter>

41) Grenfell Tower Inquiry, September 2023 Newsletter, 2023/10/3일자, <https://www.grenfelltowerinquiry.org.uk/news/september-2023-newsletter>

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 경중이 없음을 드러냄으로써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조사방법과 정보공개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의 운용에 있어서도 많은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대법원에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할수록 시간의 지연으로 인한 사건의 중대성은 희석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건조사 홈페이지를 사건별로 운영하고 해당 조사내용을 공개한다면,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인한 사법불신을 상쇄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IV.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과 적용확대의 타당성

1. 법적 성격의 문제

가. 형사특별법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서 법명상으로는 처벌에 관한 형사특별법과 같은 외관을 가진다. 이로 인하여 동법의 성질에 관하여 형사특별법인지 또는 행정법인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우선 행정법으로 보는 견해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로써 달성하려는 궁극적 목적이 생명·신체의 보호에 있으므로 본질상 안전·보건에 관한 법이라고 보거나⁴²⁾ 종사자 및 일반국민의 안전권 확보와 중대재해 방지가 동법의 목적이라고 본다.⁴³⁾

형사특별법으로 이해하는 견해들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함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거나 강력한 처벌을 입법목적으로 한다⁴⁴⁾고 본다.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처벌법이고 형법이라고 하거

42) 오대영, 앞의 논문, 327면.

43) 김영국, 앞의 논문, 113면.

44) 김진권/신만중,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방안”, 아주법학 제17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57면.

나⁴⁵⁾ 중한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거나⁴⁶⁾ 또는 다른 언급 없이 형법상 책임주의를 근간으로 동법을 비판하기도 한다.⁴⁷⁾

입법된 법률의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동법의 입법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동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관련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장의 대안으로 폐기 통합되면서, 제안이유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처벌은 수단일 뿐이고 궁극적 목적은 안전권 확보와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동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제9조는 해당 의무이행자의 구체적인 이행의무를 열거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이에 대한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3조는 조치의무 등의 이행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처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형사특별법이 아닌 행정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여부

동법상 처벌규정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과실범설과 결과적 가중범설 및 특수한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견해가 대립된다. 우선, 과실범설의 입장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의 위반은 고의이든 과실이든 상관없으며,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과실범이라고 본다. 그리고 과실범으로 볼 때 의무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⁴⁸⁾ 또 다른 입장에서는 치사상의 결과발생과 관련한 행위자의 과실책임이 핵심이며, 법원이 산업재해를 과실범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⁴⁹⁾

45) 박채은, 앞의 논문, 117면.

46) 정신교, “중대재해처벌법의 형법이론적 고찰”,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법학회, 2023, 78면.

47) 이근우, “중대재해처벌법 경과와 제정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제32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1, 218면.

48) 최정학, “중대재해처벌법-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노동법연구 제51호, 2021, 10면 이하.

49) 김명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사회법연구, 한국사회법학회, 2021, 109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는 견해는 경영자의 의무위반행위를 고의범으로 보고,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로 인한 치사상의 중한 결과발생이라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구조를 언급한다.⁵⁰⁾ 이에 따르면 비록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의무위반은 고의만 성립하고 과실에 의한 의무위반은 의무위반 자체가 아니라고 보면서 이처럼 고의에 의한 의무위반을 고의범으로 가정하게 된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특수한 결과적 가중범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전형적으로 결과적 가중범 형태를 띠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위반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이 중한 결과의 발생만을 처벌하므로 결과적 가중범 구조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특수한 형태의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본다.⁵¹⁾ 특히 이 견해는 과실범설에 대한 비판점으로 첫째 본죄의 법정형이 형법상 과실범 법정형보다 지나치게 높은 점, 둘째, 과실범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치사상죄도 과실범으로 보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위반은 고의범만으로 한정된다는 점 및 그 결과 의무위반이 과실이면 치사상에 대하여 일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의 논리는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첩되고 그와 같은 의무위반은 중대재해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이 전형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본다.

우선 특수한 형태의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보는 견해가 과실범에 대하여 비판하는 면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옳지 않다. 첫째, 일반 형법상 과실범의 형량은 형법이 규범에 반하는 심정적 반가치 태도의 형성에 대한 법적 비난이므로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므로 형량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형법상으로도 고의의 기본범죄로부터 발생하는 중한 결과에 대한 법정형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일반 형법과의 법정형의 차이를 논거로 할 수는 없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위반은 처벌규정이 존재하므로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 고의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위반 자체가 범죄이고, 범죄성립은 고의범이 원칙이며, 과실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

면; 정신교, 앞의 논문, 82면.

50) 박채은, 앞의 논문, 123-125면.

51) 김재윤, 앞의 논문, 204-205면.

실범처벌규정을 독립적으로 두어야만 하며 규정이 없는 한 불가벌이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의무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 위반이 반드시 고의범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이 범죄인 때에만 고의범 처벌이 기본원칙이 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행정법이고 행정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의무위반이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셋째, 의무위반을 고의 범으로만 한정하게 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어렵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고의여부보다 의무위반과 치사상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 판단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리 형법은 독일과 달리 과실의 기본범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무위반에 과실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이는 일반 형법이 인정하지 않는 예외적인 과실범의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결과적 가중범의 전제조건은 기본범죄의 존재이다. 따라서 기본범죄가 존재하지 않으면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예컨대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일반적으로 기수이거나 미수임을 불문하나 이때의 미수란 미수범처벌규정이 존재하고 미수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를 예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낙태죄에 있어서 낙태치사상죄라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낙태죄는 기수에 이르러야 하고, 낙태가 미수가 되는 때에는 기본범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낙태치사상죄가 아닌 과실치사상죄라고 하여야 한다. 이처럼 기본범죄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치사상죄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보는 것과는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상 치사상죄는 과실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과실범이라고 봄이 타당하지만, 앞서 살펴본 과실범설과는 그 논거를 달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자체를 과실범으로 볼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닌 의무위반을 반드시 고의에 의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즉, 의무위반은 고의이든 과실이든 관계없으며, 그로 인하여 치사상의 결과에 이르게 되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중대한 부주의(gross breach)를 요구한다. 즉, 고

의뿐만 아니라 단순한 과실을 넘어서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도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한다.

의무위반을 고의로 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고의·과실 모두 포함시키는 이유는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위반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위반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은 해당 사업장의 의무이행자가 실무자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과 같이 해당 사업의 대표이자 총괄판단권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자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점,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로이 규정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총괄대표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한 점에 있기 때문이다.

2. 행위 주체의 해석

가.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상 행위주체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대상인 단체(organisation)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이에 준하는 조직이나 경찰,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를 모두 포괄한다.

동법 제1조는 그 기업의 활동이 경영자(senior management)에 의하여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이 위반에 있어서 상당한(substantial) 요소일 것으로 요구하며, 고위 관리직이란 “그 활동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관리되고 조직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 활동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의 실제 관리나 조직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로 정의된다(동조 제4항(c)). 또한 조직에는 이익 단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등도 포함된다.

기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의무를 기업경영자가 하위 직급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경영자가 면책대상이 되는가 역시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발간한 “기업과실치사법의 이해(Understanding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2007)”에 따르면 그와 같은 책임의 부적절한 위험도 경영자의 관리불이행에 의한 기업과실치사법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⁵²⁾

자회사와 모회사, 하도급업체와 같이 그룹구조이거나 다수의 회사가 관여하는 경우

검찰은 책임있는 회사가 기소되도록 책임분담을 식별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각 조직 내에서 개별적으로 사망에 기여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그룹 내 둘 이상의 회사가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유사하게 주계약자와 하도급자가 관련된 건설 프로젝트, 임대인이 소유하고 임차인이 점유하고 시설관리회사가 관리하는 건물, 사이트 관리와 서비스제공 및 운영이 모두 별도의 회사에서 제공되는 공항 등도 이와 같이 평가된다.⁵³⁾

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행위주체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며, 명확성 원칙이 거론되는 부분이 바로 동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또는 “(나)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서 “또는”의 의미일 것이다. 즉, “또는”으로 연결되는 가와 나를 병렬적,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가와 나가 서로 다른 특정인이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귀속, 즉 누가 범죄자인가를 확정함에 있어서 가와 나 중에 행위주체를 확정하는 문제가 된다.

우선 병렬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중대재해치사상죄에 가와 나가 동시에 행위주체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는 택일적 또는 이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치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가와 나가 모두 원인된 의무위반을 하였다면 양자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함이 당연한 귀결이다.

선택적으로 보는 견해는 ‘실질적’ 책임귀속자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단일의 중대재해치사상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하나로 보고 가와 나 중에서 누구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결과인지 여부는 의무의 내용과 인과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라고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택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 담당자가 별도로 존재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자신의 안전보건의무를 특정 담당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만일 안전보건의무의 완전한 이전이 부정된다면 나의 존재가 거의 치사상

52) Ministry of Justice, Understanding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2007, 2007, 3면 이하.

53) 검찰청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corporate-manslaughter>

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실질적 판단의 문제라고 보는 견해는 선택적으로 보는 견해와 유사한 면이 있다. 실질적이란 나의 선임의 유효성,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 판단, 가에 대한 나의 보고의무 여부, 기업 안전보건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누가 행위주체가 될 것인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와 나 모두를 행위주체로 볼 수도 있다고 본다.⁵⁴⁾

중첩적으로 본다면, 단일의 중대재해치사상죄에 있어서 가와 나가 모두 존재할 경우 안전보건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과성을 판단하지 않고, 이들 모두를 행위주체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결국은 병렬적이거나 선택적, 또는 실질적 판단의 문제라고 보는 견해들이 모두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논거로부터 출발한다고 보여진다. 즉, 인과성 판단의 조건들은 사실판단의 문제이고 이는 가 이외에 나라는 의무귀속자의 존재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무의 존재와 의무의 귀속방식이며 의무의 귀속여부 등으로서 그와 관련된 여러 사실들(예컨대, 사실적 판단이라고 보는 바에 의한 예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양벌규정의 해석

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영국의 경우 기업과실치사법은 중대재해발생에 대하여 법인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의무위반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도 적용한다.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만을 행위주체로 하므로, 기업과실치사법 위반으로 개인 기업경영자가 처벌될 여지는 없다. 기업경영자는 기업과 기업과실치사법 위반의 공범관계도 성립할 수 없다.

또한 기업과실치사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소위 ‘control mind’가

54) 김재윤, 앞의 논문, 211면.

법인의 의무의 위반에 관하여 동의나 묵인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⁵⁵⁾에 의하여 해당 이사나 경영담당자(any director, manager, secretary or other similar officer of the body corporate or a person who was purporting to act in any such capacity)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이사 등이 법률상 필수적인 안전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또는 제3조 위반에 따른 제33조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사 등 개인은 이를 묵인하거나 동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의하여 유죄가 성립한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주체

법인의 범죄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제하에서는 양벌규정이라는 특별규정의 존재만이 법인처벌의 가능성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법인 처벌에 관한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단서를 통해 법인의 독자적 책임으로서 선임·감독의무를 전제로 할 것을 요청한 이후에, 모든 양벌규정에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행위자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법인에게 의무해태가 있을 경우 양벌규정을 통한 행위자 종속적인 법인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에 관하여 위헌결정하면서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⁵⁶⁾한 것이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논거 하에 선임·감독의무라는 독자적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바로 양벌규정이라고 함으로써, 엄격하게 행위자 개인의 불법성과 법인의 불법성을 구분하였다. 즉, 양벌규정에 있어서 책임주의 원칙이란 “종업원”과 관련한 법인 책임의 문제인 것이지, 법인의 대표자와는 관련이 없다.

55) 산업안전보건법 제37는 “법인에 의하여 범해진 관련 법령 조항에 따른 범죄가 그 단체의 이사, 관리자, 비서 또는 기타 유사한 임원, 또는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 자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저질러 졌거나 또는 그 책임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도 그 범죄로 유죄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6) 헌재결 2009. 7. 30. 2008헌가14, 관례집 21-2상, 87면.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이 종업원 등의 범죄가 ‘영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종업원 등이 영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 역시 ‘종업원 등의 행위’와 관련된 사정일 뿐, 영업주 자신의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⁵⁷⁾이라고 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기업의 대표자의 행위가 기업 그 자체의 행위로서 종업원이 행한 행위와 달리 평가된다면, 양벌규정에서의 선임·감독의무가 대표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기업대표자의 행위는 기업 자체의 행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기업의 선임·감독의무란 순환논리와도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논거 하에서는 경영책임자를 사업대표자(“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라고 할 경우, 사업대표자는 기업과 동일시되므로 양벌규정에 있어서 선임·감독의무위반 여부는 해석상 안전보건업무담당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의 양벌규정에 있어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선임·감독의무 이행에 의한 면책은 대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결과, 대표자의 위반행위는 기업의 위반행위가 되어 예외 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반면 안전보건담당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업에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임·감독의무 해태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의 문제

가. 영국의 사례

영국의 지난 기업과실치사법 적용과 관련하여 주요 결함이라고 지적되는 바는 대기업 기소 실패와 상한 없는 벌금의 실효성에 관한 것이다.

57) 헌재결 2010. 7. 29. 2009헌가25등, 판례집 22-2상, 183-184면.

첫째, 지금까지 기업과실치사법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된 모든 기업들은 과실치사라는 보통법에 따라 성공적으로 기소될 수 있었던 중소기업들이다. 그리고 기업과실치사법이 표면적으로 구상하였던 거대하고 복잡한 기업들은 지금까지 배제되었다. 이는 모든 유죄 판결이 단일 사망자를 포함한 범죄와 관련이 있는 반면, 기업과실치사법의 이면에 있는 주요 의도는 여러 개의 사망 사건을 비롯한 대형 사고를 포괄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실패라고 본다.

둘째, 법률상 법정형인 “상한 없는 벌금”과 달리 판결선고 당시 부과된 벌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어떠한 기업이든 벌금의 가장 중대한 결과는 파산일 것이다. 2015년 양형기준에서는 사업의 중단이 “허용되는 결과(acceptable consequence)”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원은 벌금 납부 시간의 유예를 허용하거나 분할 납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⁵⁸⁾에서 법원은 “회사가 청산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판단에 따르면 이는 심각한 의무위반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일”⁵⁹⁾이라고 판결하였다.

실제로 법원이 기업과실치사죄를 유죄로 판결할 때에는 이미 의무위반을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그와 같은 파산에 이르게 하는 벌금액을 부과할 것인가는 무고한 노동자들의 잠재적인 피해여부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몇 년간의 벌금 납부를 선고하는 이유가 된다. 특히 양형재량과 관련하여 벌금의 분할납부는 다수의 판결에서 회사의 청산(폐업) 여부를 고려하여 판결되어 왔다. 예컨대, 2013년의 *Murray & son Ltd* 사건⁶⁰⁾에서도 Weir 판사는 “제출된 계정과 공인회계사의 증거 모두 회사가 번창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주로 이와 같은 농촌 지역에서 고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에 따르면 모든 벌금은 징벌적이어야 하고 회사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해야 한다”⁶¹⁾

58) *R. v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Ltd* [2011] EWCA Crim 1337; [2012] 1 Cr. App. R. (S.) 26

59) “the fact that the company would be put into liquidation would be unfortunate, but in [their] judgment, this was unavoidable and inevitable given the serious breach of duty committed”

60) *R. v J Murray & Son Ltd* [2013] NICC 15.

61) “careful account of the fact that the accounts presented and the evidence of the Chartered Accountant both indicate that the company is not flourishing and I have no wish to see it forced out of business, principally because it is providing employment in a rural area in these

고 판시하였다. 이 때문에 징벌적인 벌금액을 부과되, 분할납부를 통해 회사의 폐업을 막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동 판결에서도 매년 2만 파운드의 벌금을 5년간 분할납부할 것을 선고하였다. 분할납부의 선고시 회사 직원의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는 장래 무고한 직원의 해고될 가능성을 벌금 산정에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영국의 경우 기업과실치사법에 의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면서도 이로 인한 기업의 도산과 근로자의 직업상실을 벌금액 산정에 상당한 수준으로 고려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었던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우 영세한 상태여서, 재판과정 또는 벌금확정 이후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⁶²⁾

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사업장 확대 문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시행일자에 대하여는 2020년 6월 11일의 최초 발의안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부칙으로 정하였으나, 2020년 12월의 발의안에서 비로소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⁶³⁾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공포 후 1년을, 그리고 그 미만의 사업장은 공포 후 4년을 시행시점으로 차별화하였다. 그리고 2021년 1월 법제사법위원장의 대안발의에서 비로소 현행법과 동일한 부칙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어떤 발의안에서도 시행시점에 대한 정확한 해설이나 이유를 제시한 바는 없다. 다만, 박범계 등의 발의안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이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확장한다고 한 바로 미루어보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동법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마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을 예정하고,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으로 추측된다.

difficult times. Nonetheless the guidelines require that any fine must be punitive and sufficient to have an impact on the company”

62) 이데일리, “영국판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기업 절반 부도…영세 중소기업 처벌 물러”, 2022/7/5,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847046632391568&mediaCodeNo=257&utm_source=https://www.google.com/

63) 박범계 등,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2020/12/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향후 부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5인 이상은 노사관계법의 적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확대적용이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지 아니면 반대로 영세기업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경제저하의 결과만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팽팽한 논쟁이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칙상의 시행일을 2년간 다시 유예하자는 주장이 수면 위로 오르고 있기도 하다.⁶⁴⁾

2021년 기준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사망건수는 567건으로 사망만인율은 1.76으로 전체 사망만인율 1.07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사업장 규모를 단위별로 구분할 때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낸다. 또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단순 합계는 792명으로 해당 구간의 사망만인율은 0.94로 전체 사망만인율 대비 낮은 편에 해당한다. 사망만인율이 가장 높은 구간은 500-999인으로 1.71에 이르며, 5인 이상 70인 미만 구간보다 약 1.8배 높은 사망비율을 나타낸다. 물론 단순 사망재해와 중대재해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망만인율의 비교를 통해 중대재해율을 명확하게 추론할 수는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지표가 주는 행간의 의미를 전혀 무시할 수도 없다.

이미 제정된 법의 시행유예 여부는 전적으로 정책적 판단이다. 이미 법률은 대다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있고, 시행 이후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12.9% 감소되었다.⁶⁵⁾ 다만, 1분기 사망사고에 있어서 50인 이상 사업장이 49명(48건)으로서 지난 해 68명(56건)의 사망보다 사고건수 자체도 15% 감소한 수준이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총 76건의 사망사고로 79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다. 또한 지난해 대비 사망자수는 동일하고 사건은 단지 1건 감소하였을 뿐이다. 2022년 기준 전체 사업장수 대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전체의 22.7%에 해당한다. 반면 50인 이상의 사업장 수는 전체 대비 1.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5인 미만의 극영세 사업주에 해당한다.⁶⁶⁾ 사업장수 대비 중대재해 발생건수를 고려한다면, 50인 미만 사

64) 안전신문,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제화 첫발”, 2023/9/7,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59>; 세상을 바꾼 시민언론 민들레, ““중대재해법 확대시행 유예 연장” 제계 편든 정부“, 2023/10/12,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91>

65) 고용노동부, “2023년 3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2023/5/15, 1면.

66) KOSIS, “규모별·지역별 사업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총 사업장 개수는 2,195,391개이고, 5인

업장의 경우 보건·안전의무로부터의 해방이 재해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아닌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영국의 경우 주로 1-2인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과실치사법 적용이 절반 이상의 기업파산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및 지역경제를 위하여 처벌대상 기업에게 분할납부를 통한 기업파산 회피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발생건수만으로 유예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당부당의 결론에 이르기보다는 정책결정에서 보다 많은 고려요소들이 분석되어야 함을 확인하고자 한다.

V. 나가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대표자 처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전 예방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정 이전부터 시행 이후까지 법적 성격, 구성요건의 명확성, 의무범위의 구체성, 처벌의 과중문제 등 끊임없는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이후 다소간의 중대재해사고가 감소하였다면 법의 제정 목적이 실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니와 반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하기도 모호하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15년이나 앞서 기업과실치사법을 시행하여 온 영국에서조차 동법의 입법목적의 실현여부에 대하여는 비판이 더욱 크다.

여기에서는 우선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과 영국의 중대재해 발생 추이와 특징을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행위주체로서 기업, 자회사와 모회사의 책임귀속 문제, 단일 사고에 대한 다수 기업의 처벌가능성 등에 관한 영국의 사례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우리 법제 해석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이 형사특별법이 아닌 안전·보건에 관한 행정법이라는 점, 행위주체로서 기업의 대표자 해석, 양벌규정의 해석문제와 50인 미만 사업장예의 확대적용 문제 등을 영국사

미만 사업장수는 1,667,037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수는 499,762개, 50인 이상 사업장 수는 총 28,692개이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91>

례와 비교하여 해결해보고자 하였다.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산업재해와 관련되어 요구되는 규범의 범위를 확장시키지만, 예측불가능한 위험요소의 증대는 관련 법으로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업에게 요구되는 의무의 범위는 넓어지고, 안전확충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경제적 규모로 인하여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러나 헌법이 근로를 의무이자 권리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유지에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발전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자는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산업현장에서 ‘위험작업 거부권’이 있다. 하루 평균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OECD 국가 중 국가산재사망률 1위의 민낯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마지막 희망카드라면, 해당 카드가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용노동부, “2023년 3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2023/5/15
- 고용노동부, 2022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결과 발표, 2023/1/19
- 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도서출판 새빛, 2022
- 김명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사회법연구, 한국사회법학회, 2021
- 김영국,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법정책 과제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의 관점에서-”,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한국입법학회, 2021
- 김재윤, “형사법적 관점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발전방향”, 형사법연구 제34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22/9
- 김진권/신만중,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방안”, 아주법학 제17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 김혜경,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요인 분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6
-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해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례분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
- 박채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처벌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제56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2/12
- 송기동, “영미 기업범죄 형사책임의 전개”,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12
- 송인택 외 4인, 중대재해처벌법해설과 대응, 박영사, 2022
- 오대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상 쟁점에 관한 소고”, 법조 제71권 제4호, 법조협회, 2022/8
- 이근우, “중대재해처벌법 경과와 제정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제32권 제4

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1

임우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20/12/2

정신교, “중대재해처벌법의 형법이론적 고찰”,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법학회, 2023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2

조흡학,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에 관한 고소”, 노동법논총 제 53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1/12

최정학, “중대재해처벌법 - 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노동법연구 제51호, 2021

통계청, 사망재해 현황 및 분석, 2021

[외국문헌]

British Safty Council, Safe Management, 2017/5/23, <https://www.britsafe.org/publications/safety-management-magazine/safety-management-magazine/2017/three-directors-jailed-over-workers-roof-fall-death/>

Burges Salmon, Parent company liable for safety breaches of its subsidiary, 2015/12, https://www.burges-salmon.com/-/media/files/publications/open-access/parent_company_liable_for_safety_breaches_of_its_subsiary.pdf

Grenfell Tower Inquiry, <https://www.grenfelltowerinquiry.org.uk/news/march-2022-newsletter>

Grenfell Tower Inquiry, September 2023 Newsletter, 2023/10/3, <https://www.grenfelltowerinquiry.org.uk/news/september-2023-newsletter>

HSE, Defendant details - Koseoglu Metal Work Limited, https://resources.hse.gov.uk/convictions-history/defendant/defendant_details.asp?SF=DID&SV=4396286

HSE, Technical report,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on the interpretation of Health and Safety Statistics 2021/22, HSE, 2022/11/23

HSE, Work-related fatal injuries in Great Britaun, 2023, Annual statistics, HSE,

2023/7/6

In Grenfell Inquiry, U.K. Weighs 2 Types of Manslaughter Charge,

<https://www.nytimes.com/2017/09/19/world/europe/uk-grenfell-manslaughter.html>

Jocelyn Ledward, Corporate manslaughter: more and larger companies are due to pay the penalty, https://www.qebholliswhiteman.co.uk/cms/document/nfdc_corporate_manslaughter.pdf

Ministry of Justice, Understanding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2007, 2007

Number of fatal injuries to workers in Great Britain from 1974 to 2021,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92272/fatal-injuries-at-work-great-britain-by-employment-y-on-y/>

The Open University, 3.2 The history of corporate manslaughter prosecutions in the UK, <https://www.open.edu/openlearn/money-business/corporate-responsibility-industrial-incidents/content-section-3.2>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Focus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of UK -

Kim, Hyekyng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enacted in 2021 is about to be expanded and implemented. However, there is still controversy over the legal and theoretical problems and practical effectiveness of this Act. In other words, not only is there criticism on the legal nature of this law, the clarity of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the concreteness of the scope of obligations, and the fact that the punishment is too heavy, but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serious accidents have actually decreased after implementation.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purpose of enacting the law has failed, but on the contrar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has been achieved. However, even in the UK, which has implemented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Murder Act 15 years before Korea, stronger criticism has continued on whether the legislative purpose is realized.

In this study, first of all, the enactment of the Corporate Negligence Act in the UK and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serious accidents in the UK were analyzed.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e looked at the cases of the UK and court rulings on the issue of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to companies, subsidiaries and parent companies, and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for multiple companies for a single accident. And based on this, we tried to analyze what could be borrowed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Serious

* Professor, College of Social Science, Keimyung University, Ph.D. in Law

Accident Punishment Act. Finally, the legal natur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an administrative law on safety and health, not a special criminal law, and the meaning of a company's representative as an actor, the interpretation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and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to workplac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were compared to the UK case.

The rapid develop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expands the scope of norms required for industrial accidents, but the increase in unpredictable risk factors exceeds the limit that all relevant laws can cover. As a result, it is inevitable that the scope of obligations required by companies will be widened, and the burden on companies will increase due to the scale of human and material economy invested in safety expansion. However, the recognition that industrial development is possible only after securing the safety of workers must be established.

❖ Key words: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senior management's gross breach of duty of care, serious accident, serious industrial accident, business owner,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Joint Penalty Provisions

청소년 약물 오남용 경험이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

심 혜 인**

국 | 문 | 요 | 약

‘나비약’, ‘펜타닐패치’ 등 우울증, 다이어트, ADHD 치료 등에 쓰이는 의료용 마약류 등 다양한 중독성향 약물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어 심각성을 볼 수 있다. 이와동시에 청소년 주요 사망 원인이 자살인데,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자살 시도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과 자살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연관성을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고자 질병관리청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제17차(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차데이터의 총 54,848개의 표본 자료를 분석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 약물 오남용 경험이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 자살 생각, 계획, 시도에 약물 오남용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자살 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약물 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3.12.31.4.103>.

❖ 주제어 : 청소년, 약물 오남용,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crimesim@ysu.ac.kr)

I. 서론

젊은 성인이 조기에 사망하는 주요한 원인은 자살이다. 세계 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자살 완료율은 인구 10만 명당 16명에 달하며, 매년 전 세계 백만 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자살 시도는 자살 완료보다 5배에서 20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고(Harris & Barraclough, 1997; Darke et al., 2004; Maloney et al., 2007; WISQARSTM, 2009), 성인의 약 5%가 평생에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essler et al., 1999; Dragisic et al., 2015 재인용). 국내에서도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2020년 10대의 자살이 차지하는 백분율(구성비)이 41.1%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여 2018년 이후 지속적인 자살률 증가 양상이 보여진다(보건복지부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약물 오남용이란, WHO에서는 “약물사용으로 나타난 결과와 관계없이, 비의학적으로 또는 허용되는 의료와 일치하지 않게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라 정의한다(채수미, 201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헤로인과 같은 불법약물이나 신경안정제 같은 합법약물을 의학적 지도 감독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약물남용이라하며, 합법약물에 대한 지식이 없이 약물을 사용하는 약물의 오용과는 다르다고 지적하였다¹⁾. 자살의 주된 이유 중 약물 오용과 같은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 SUD)가 있을 때, 자살을 시도하는 것과 같이 자살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SAMHSA, 2008; HHS, 2012; Wilcox, Conner, & Caine, 2004; Pompili et al., 2010). 사용하는 물질의 종류보다 물질의 수를 자살의 주요 예측 요인으로 본다(HHS, 2012). 약물을 주입했을 때, 자살 위험률은 약 14배 증가하는데(Wilcox, Conner, & Caine, 2004; SAMHSA, 2009), 이와 같이 자살률에 약물 오남용이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약물에 취했을 때, 발생하는 탈억제(disinhibition) 현상을 경험하기 때문이다(HHS, 2012; Pompili et al., 2010). 일시적인 외부자극으로 인해 억제를 잃게 되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으로 죽음까지도 초래하는 것이다.

최근 우울증, 다이어트, ADHD 치료 등에 쓰이는 의료용 마약류 등 다양한 중독성향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마약류폐해알리미> 약물남용
<http://antidrug.drugfree.or.kr/page/?midx=36>에서 2023. 12. 12. 인출.

약물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2021년 약물 오남용 중독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한 10대의 경우 전년 대비 41.4% 증가한 1,678명에 이른다. 또한, 한 해 평균 1,500여명의 청소년이 약물에 중독되어 자살 시도로 이어져 응급실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²⁾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16세에서 19세의 연령대와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의도적 약물중독 환자의 응급실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진통제가 가장 흔한 약이었으나, 그 비율은 줄어들고 벤조디아제핀, 항우울제, 항정신병약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연령층을 고려한 중독 예방 대책 및 처방 약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 보고 있다(박진석 외,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 약물 오남용과 자살 위험성 연구 주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이처럼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앞으로 서로 다른 약물에 대한 논의, 약물의 조합, 자살 행동에 대한 자가 투약 등의 문제 등 다양한 논의로 진행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마약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나비약’, ‘펜타닐패치’ 등 약물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국외에서는 약물 오남용과 자살의 관련성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어, 실증연구를 통해 국내 청소년 약물 오남용 경험과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등과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적절한 청소년 약물 오남용 대응과 예방을 통해 자살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청소년 약물오남용

10대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병원 진료 현황은 <표 1>과 같다. 2019년 1,308명, 2020년 1,187명, 2021년 1,678명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여자 청소년 약물 오남용 중독 진료 관련하여 2019년 79.3%(1,037명), 2020년 80.3%(953명), 2021년

2) 고정민, “약물 중독된 10대 청소년들, 자살 시도도 늘어”, 청년의사, 2022년 10월 10일,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923>

〈표 1〉 10대 약물 오남용 중독 진료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명 (%)	명 (%)	명 (%)
남자	271 (20.7)	234 (19.7)	304 (18.1)
여자	1,037 (79.3)	953 (80.3)	1,374 (81.9)
총원	1,308 (100.0)	1,187 (100.0)	1,678 (100.0)

출처: 서동용 국회의원실(2022) 자료 수정

81.9%(1,374명)로 남자 청소년에 비해 8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2022년 기준 환각성 물질 및 약물인 식욕억제제(나비약) 복용을 경험한 청소년은 0.9%였으며, 진통제(펜타닐패치) 사용 경험은 10.4%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약물 취득에 대하여 중복 응답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진통제(펜타닐패치)는 94.9% 병원 처방한 것 이외의 취득 방법 중 다른 사람(성인)에 얻는 방법이 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구 또는 선배에게 얻어서 1.5%, 인터넷(SNS 등)을 통해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욕억제제(나비약)의 경우 62.7%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이었으며, 인터넷(SNS 등)을 통한 구매가 22.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성인)에게서 얻는 방법 9.8%, 친구 또는 선배에게 얻는 방법 6.6%, 기타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김지경 외, 2022).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약물 구매 또는 다른 사람(성인)에게서 얻는 방법 등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때, 인터넷을 통한 약물 구매 및 개인 간 약물 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의 가중처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청소년 자살

10대 자살 현황은 2016년 273명, 2017년 254명, 2018년 300명, 2019년 298명, 2020년 31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자살시도로 청소년이 응급실을 내원한 현황은 <표 2>와 같다.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팬데믹 상황이 가장 심각한 수준일 때를 고려하더라도, 2021년 청소년의 자해 및 자살 시도자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약물 등 중독에 의한 자살시도의 비율이 2019년 45.4%, 2020년 43.6%, 2021년 48.6%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표 2〉 청소년 자살시도 응급실 내원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명 (%)	명 (%)	명 (%)
자해/자살 시도자 산출 대상		4,042 (100.0)	3,982 (100.0)	4,836 (100.0)
방법 (손상 기전)	중독	1,835 (45.4)	1,736 (43.6)	2,350 (48.6)
	베임/찔림	1,632 (40.4)	1,696 (42.6)	1,946 (40.2)
	기타	575 (14.2)	550 (13.8)	540 (11.2)

출처: 서동용 국회의원실(2022) 자료 수정

있다(서동용 국회의원실, 2022).

자살의 강력한 위험인자는 자살의 시도이다. 자살을 재시도함으로써 더 치명적이고, 지속적인 자살 관련 사고로 이어진다(Bostwick et al., 2016). 자살 시도 환자 중 16%가 1년 이내에 병원을 재방문 하며(Griffin et al., 2014), 자살 시도 환자 중 25%가 재시도를 하며(Tender et al., 1999), 12%가 자살로 인한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자살시도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재시도를 예방하고, 반복적, 치명적 결과의 초래를 예방할 필요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볼 수 있다.

또한, 2020년 기준 10대의 남자 자살률은 52.1%(164명), 여자 자살률은 47.9%(151명)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성별에 따른 자살률을 보았을 때, 남자 68.9%, 여자 31.1%인 것을 보았을 때, 10대 남자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약물 남용 또는 의존 등에 의한 자살에 관한 성별의 비율을 살펴보면 중독 남성은 비중독 남성보다 2배~3배 자살 완료율이 더 높고, 중독 여성은 비중독 여성보다 6.5배~9배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arke et al., 2004; Maloney et al., 2007).

3. 청소년 약물 오남용과 자살의 선행연구

일반적으로 ‘약물’은 생리적 기능에 특수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로 정의한다(최재윤, 이광섭, 2011). 청소년의 약물과 자살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약물에 대해서는 음주(알코올) 및 흡연을 통칭하였고, 음주와 흡연이 청소년의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와 관련성이 있음을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다(김재엽 등, 2007; 김현옥,

2007). 김미경(201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음주, 흡연, 폭력을 동시에 할 경우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의 예측 오즈비(Odds Ratio)가 더 커지는 고위험군임을 실증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 최근 연구된 이해경(2020)의 연구에서도 약물경험이 자살위험 예측요인인지 실증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 현재 음주 및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에 청소년 자살 위험이 통계적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 계획, 시도에 대한 문항을 보았으며, 세 문항을 모두 합산하여 자살의 위험 수준 정도를 통해 자살위험성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음주 및 흡연이 아닌 포괄적 약물 정의로 정상적인 용도의 약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총괄하여 환각이나 의존성을 발휘하는 약물의 경우 ‘마약류’로 정의할 수 있다(최재윤, 이광섭, 2011). 이 연구에서는 ‘합법적 약물’ 및 대마, 코카인 등 포괄적인 범위에서 오남용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하며, 특히, 우울증 및 기타 기분 장애 다음으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자살행동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SAMHSA, 2008). Wasserman과 McReynolds(2006)의 연구에서 물질사용장애(SUD)가 자살 시도 경험과 일생의 자살 시도 경험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임을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되었고, Friedrich 등(2020)의 연구에서는 벤조디아제핀계 처방이 소아·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증가와 같은 계열의 섭취를 통한 자살 시도 증가와의 관계성을 논의하였다. 이는 이경재 등(2017)의 연구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 처방 증가와 같은 수면제 및 진정제 처방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조명하였으며, Friedrich 등(2020)의 연구를 바탕으로 추론하여 볼 때, 국내 벤조디아제핀계 중독에 따른 청소년 응급실 방문의 증가를 예측하였다(박진석 외, 2023).

안소윤, 박완주(2023)의 연구에서는 물질중독 환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다학제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중독물질 거절, 자기효능감, 충동성,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다학제 재발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자살생각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검증하였고, Beck 외(1979)의 자살생각 척도를 신민섭(1993)이 번안한 척도(Beck 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를 활용하여 총 19문항으로 구성된 한글판 자살생각(K-BSS)도구를 활용하여 단편적 자살생각이 아닌, 자살생각 척도를 활용한 변수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볼 때, 청소년의 약물오남용과 자살 행동과의 실증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을 볼 수 있었다.

4. 이론적 모형 및 연구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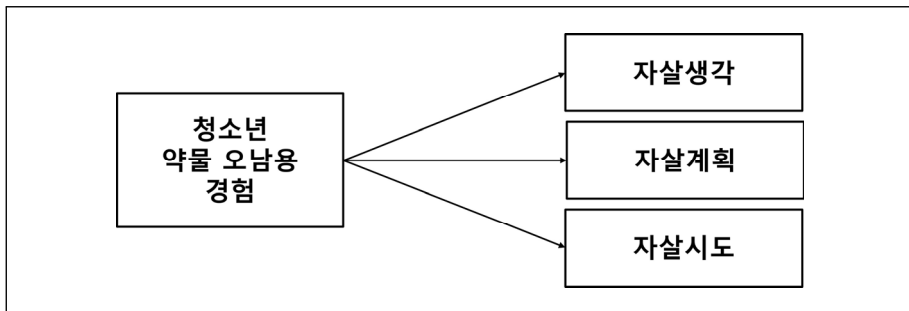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과 자살 생각, 계획, 시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관련 배경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그림 1]과 같다.

H1: 청소년 약물 오남용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청소년 약물 오남용은 자살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청소년 약물 오남용은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청소년 약물 오남용 경험과 자살생각, 계획, 시도와의 영향 관계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이 연구의 자료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수집된 “제17차(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데이터이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전국 단위 청소년 건강행태인식조사로, 중1부터 고3까지가 조사 대상이며, 자기기입식 익명성 온라인 조사이다.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을 위해 층화, 군집, 다단계 표본 추출 등의 단계를 거친 복합 표본 설계를 통해,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국내 청소년을 대표

하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여 청소년의 건강행태 수준을 추정하도록 산출하였다. 총 54,848 개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변수측정 및 연구모형

가. 종속변수

첫 번째 종속변수는 ‘자살 생각’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이고, 두 번째 종속변수는 ‘자살 계획’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까?’이다. 세 번째 종속변수는 ‘자살 시도’로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까?’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1=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2=최근 12개월 동안 있다’로 측정된 값을 ‘1=있다, 0=없다’의 더미 변수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나. 독립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치료 목적으로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먹은 것을 제외한, 커피, 카페인 음료, 에너지드링크, 비타민, 영양제 등은 약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가정하여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또는 일부러 약물(신경안정제, 각성제, 수면제, 식욕억제제, 마약성 진통제 등)을 먹거나 본드(접착제), 대마초, 코카인, 부탄가스 등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이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없다, 2=있다’로 측정된 값을 ‘1=있다, 0=없다’의 더미 변수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 통제변수

‘성별’, ‘학교’, ‘학년’, ‘학업성적’, ‘경제적 상태’, ‘부모 동거 여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상태’를 분석모형에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성별은 ‘1=남자, 2=여자’로 측정된 값을 ‘1=여자, 0=남자’의 더미변수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교’는 ‘1=고등학교, 0=중학교’ 더미변수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학년은 ‘1=1학년, 2=2학년, 3=3학년’ 변수를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상태’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1=상, 2=중상, 3=중, 4=중하, 5=하'로 측정된 값을 '1=하, 2=중(중상, 중하 포함), 3=상'으로 변수를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부모 동거 여부'는 '현재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하시오'에서 '아버지', '어머니' 각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1=함께 살고 있다, 2=함께 살고 있지 않다'로 측정된 값을 '1=부모 모두 함께 살고 있다, 0=기타' 더미변수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상태'는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1=매우 건강한 편이다, 2=건강한 편이다, 3=보통이다, 4=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5=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로 측정된 값을 '1=건강하지 못한 편이다(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2=보통이다, 3=건강한 편이다(매우 건강한 편이다'로 변수를 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8.0버전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청소년 약물 오남용,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주요 변수에 대해서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와 관련성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약물오남용이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교차비(Odds ratio)를 산출하였다.

IV. 분석결과

1. 빈도분석 결과

이 연구의 주요 변수의 빈도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남자 51.8%(28,401명), 여자 48.2%(26,447명)이고, 중학교 54.7%(30,015명), 고등학교 45.3%(24,833명)이다. 2학년 34.4%(18,882명), 1학년 33.7%(18,477명), 3학년 31.9%(17,489명)이다. 학업성적은 중 77.2%(42,351명)로 가장 많았으며, 상 12.9%

(7,084명), 하 9.9%(5,413명) 순이었다. 경제적 상태는 중 87.1%(47,792명) 가장 많았고, 상 10.8%(5,944명), 하 2.0%(1,1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함께 동거하는 경우 70.7%(38,801명), 그렇지 않은 경우 29.3%(16,047명)이었다. 주관적 인지 건강상태에서 건강한 편이 64.8%(35,529명)로 가장 많았고, 보통 26.1%(14,298명), 건강하지 못한 편 9.2%(5,021명)의 순이었다. 약물 오남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0.7%(395명)이었으며, 99.3%(54,454명)은 약물 오남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경우 12.7%(6,956명), 자살 계획 경험이 있는 경우 4.0%(2,206명),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 2.3%(1,245명)로 나타났다.

〈표 3〉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

변수(N=54,848)		빈도	(%)
통제변수	성별	남자	28,401 (51.8)
		여자	26,447 (48.2)
	학교	중학교	30,015 (54.7)
		고등학교	24,833 (45.3)
	학년	1학년	18,477 (33.7)
		2학년	18,882 (34.4)
		3학년	17,489 (31.9)
	학업성적	하	5,413 (9.9)
		중	42,351 (77.2)
		상	7,084 (12.9)
	경제적 상태	하	1,112 (2.0)
		중	47,792 (87.1)
		상	5,944 (10.8)
	부모 동거 여부	아니오	16,047 (29.3)
		예	38,801 (70.7)
독립변수	주관적 인지 건강상태	건강하지 못한 편	5,021 (9.2)
		보통	14,298 (26.1)
		건강한 편	35,529 (64.8)
	청소년 약물 오남용	아니오	54,453 (99.3)
		예	395 (0.7)
종속변수	자살 생각	아니오	47,892 (87.3)
		예	6,956 (12.7)
	자살 계획	아니오	52,642 (96.0)
		예	2,206 (4.0)
	자살 시도	아니오	53,603 (97.7)
		예	1,245 (2.3)

2.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와의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의 관련성은 <표 4>와 같다.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모두 청소년 약물 오남용, 성별, 학교, 학업성적, 경제적 상태, 주관적 인지 건강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의 경우에서만 부모동거여부와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살생각의 경우 청소년 약물 오남용($x^2=279.108$, $p<.001$), 성별($x^2=611.389$, $p<.001$), 학교($x^2=17.310$, $p<.001$), 학업성적($x^2=159.325$, $p<.001$), 경제적 상태($x^2=261.741$, $p<.001$), 주관적 인지 건강상태($x^2=2030.180$, $p<.001$)와 통계적인 관련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계획의 경우 청소년 약물 오남용($x^2=362.839$, $p<.001$), 성별($x^2=132.133$, $p<.001$), 학교($x^2=17.858$, $p<.001$), 학업성적($x^2=76.829$, $p<.001$), 경제적 상태($x^2=161.715$, $p<.001$), 주관적 인지 건강상태($x^2=1003.593$, $p<.001$)가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의 경우 청소년 약물 오남용($x^2=299.379$, $p<.001$), 성별($x^2=147.490$, $p<.001$), 학교($x^2=7.543$, $p<.01$), 학업성적($x^2=89.217$, $p<.001$), 경제적 상태($x^2=219.750$, $p<.001$), 부모 동거 여부($x^2=10.633$, $p<.01$), 주관적 인지 건강상태($x^2=536.214$, $p<.001$).

3. 청소년 약물오남용이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약물오남용 경험이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지스틱 회귀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다.

자살생각의 경우 청소년 약물 오남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교차비가 4.251배 높았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차비가 1.822배 높았다. 학교구분의 경우 중학생에 대해 고등학생일 경우 교차비가 0.800로 중학생인 경우 위험도가 높았다. 학업성적의 경우 하에 대한 중의 교차비가 0.733, 상의 교차비가 0.724로 하의 위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상태의 경우 하에 대한 중의 교차비가 0.437, 상의 교차비가 0.433으로 하의 위험도가 높았다. 부모 동거 여부에서 부모님과 같이 동

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부모 동거를 하고 있는 집단의 교차비가 0.938로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집단의 위험도가 높았다. 주관적 인지 건강상태의 경우에도 건강하지 못한 편에 대한 보통의 교차비가 0.474, 건강한 편의 교차비가 0.245로 건강하지 못한 편의 위험도가 높았다.

자살계획의 경우 청소년 약물 오남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교차비가 4.849배 높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611배 높았다. 학교구분의 경우 중학생에 대해 고등학생일 경우 교차비가 0.714로 중학생인 경우 위험도가 높았고, 1학년에 대해 3학년일 경우 교차비가 0.870으로 1학년의 위험도가 높았다. 학업성적은 하에 대해 중의 교차비가 0.754, 상의 교차비가 0.737로 하일 경우 위험도가 높았다. 경제적 상태의 경우 하에 대해 중의 교차비가 0.333, 상의 교차비가 0.428로 하일 경우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집단에 대해 부모님과 동거하는 집단의 교차비가 0.798로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집단의 위험도가 높았다. 주관적 인지 건강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한 편에 대한 보통의 교차비가 0.408, 건강한 편의 교차비가 0.214로 건강하지 못한 편의 위험도가 높았다.

자살시도의 경우 청소년약물 오남용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있는 집단의 교차비가 6.369배로 높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010배 높았다. 중학생에 대한 고등학생의 교차비가 0.724로 중학생의 위험도가 높았고, 1학년에 대한 3학년의 교차비가 0.836으로 1학년의 위험도가 높았다. 학업성적 하에 대한 중의 교차비가 0.638이었으며, 상의 교차비가 0.605로 하의 위험도가 높았고, 경제적 상태 하에 대한 중의 교차비가 0.310, 상의 교차비가 0.396으로 하의 위험도가 높았다. 부모 동거를 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하는 집단의 교차비가 0.788로 부모 동거를 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위험도가 높았다. 주관적 인지 건강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한 편에 대한 보통의 교차비가 0.485, 건강한 편의 교차비가 0.241로 건강하지 못한 편의 위험도가 높았다.

〈표 4〉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와의 관련성

변수(N=51,848)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아니오 빈도(%)	예 빈도(%)	χ^2	아니오 빈도(%)	예 빈도(%)	χ^2	아니오 빈도(%)	예 빈도(%)	χ^2
청소년 약물 오남용	아니오	47656 87.5	6797 12.5	273,108***	52337 96.1	2116 3.9	362,839***	53268 97.8	1185 2.2	299,379***	
	예	236 59.7	159 40.3		305 77.2	90 22.8		335 84.8	60 15.2		
성별	남자	25762 90.7	2639 9.3	611,389***	27523 96.9	878 3.1	132,133***	27968 98.5	433 1.5	147,490***	
	여자	22130 83.7	4317 16.3		25119 95.0	1328 5.0		25635 96.9	812 3.1		
학교	중학교	26047 86.8	3968 13.2	17,310***	28711 95.7	1304 4.3	17,858***	29286 97.6	729 2.4	7,543**	
	고등학교	21845 88.0	2988 12.0		23931 96.4	902 3.6		24317 97.9	516 2.1		
학년	1학년	16203 87.7	2274 12.3	4,397	17718 95.9	759 4.1	0,540	18042 97.6	435 2.4	1,103	
	2학년	16422 87.0	2460 13.0		18129 96.0	753 4.0		18455 97.7	427 2.3		
	3학년	15267 87.3	2222 12.7		16795 96.0	694 4.0		17106 97.8	383 2.2		
학업성적	하	4436 82.0	977 18.0	159,325***	5075 93.8	338 6.2	76,829***	5192 95.9	221 4.1	89,217***	
	중	37183 87.8	5168 12.2		40750 96.2	1601 3.8		41468 97.9	883 2.1		
	상	6273 88.6	811 11.4		6817 96.2	267 3.8		6943 98.0	141 2.0		
경제적 상태	하	798 71.8	314 28.2	261,741***	963 86.6	149 13.4	261,018***	1014 91.2	98 8.8	219,750***	
	중	41795 87.5	5997 12.5		45985 96.2	1807 3.8		46781 97.9	1011 2.1		
	상	5299 89.1	645 10.9		5694 95.8	250 4.2		5808 97.7	136 2.3		
부모 동거 여부	아니오	13995 87.2	2052 12.8	0,226	15316 95.4	731 4.6	16,715***	15631 97.4	416 2.6	10,633**	
	예	33897 87.4	4904 12.6		37326 96.2	1475 3.8		37972 97.9	829 2.1		
주관적 인지 건강상태	건강하지 못한 편	3525 70.2	1496 29.8	2030,180***	4433 88.3	588 11.7	1003,593***	4702 93.6	319 6.4	536,214***	
	보통	11930 83.4	2368 16.6		13585 95.0	713 5.0		13867 97.0	431 3.0		
	건강한 편	32437 91.3	3092 8.7		34624 97.5	905 2.5		35034 98.6	495 1.4		

*p<.05, **p<.01, ***p<.001

〈표 5〉 청소년 약물오남용이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N=54,848)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OR	(95% C.I.)	OR	(95% C.I.)	OR	(95% C.I.)
청소년 약물 오남용	아니오	1		1		1	
	예	4.251	(3.425 ~ 5.275)***	5.849	(4.537 ~ 7.539)***	6.369	(4.735 ~ 8.567)***
성별	남자	1		1		1	
	여자	1.822	(1.727 ~ 1.923)***	1.611	(1.473 ~ 1.762)***	2.010	(1.780 ~ 2.268)***
학교	중학교	1		1		1	
	고등학교	0.800	(0.758 ~ 0.843)***	0.714	(0.652 ~ 0.781)***	0.724	(0.643 ~ 0.814)***
학년	1학년	1		1		1	
	2학년	1.017	(0.955 ~ 1.083)	0.912	(0.821 ~ 1.012)	0.899	(0.783 ~ 1.031)
	3학년	0.962	(0.902 ~ 1.026)	0.870	(0.781 ~ 0.969)*	0.836	(0.725 ~ 0.963)*
	하	1		1		1	
학업성적	중	0.733	(0.676 ~ 0.794)***	0.754	(0.663 ~ 0.858)***	0.638	(0.543 ~ 0.749)***
	상	0.724	(0.650 ~ 0.807)***	0.737	(0.619 ~ 0.879)**	0.605	(0.482 ~ 0.759)***
	하	1		1		1	
경제적 상태	중	0.437	(0.378 ~ 0.505)***	0.333	(0.274 ~ 0.404)***	0.310	(0.245 ~ 0.391)***
	상	0.433	(0.367 ~ 0.511)***	0.428	(0.340 ~ 0.539)***	0.396	(0.297 ~ 0.529)***
부모 동거 여부	아니오	1		1		1	
	예	0.938	(0.885 ~ 0.995)*	0.798	(0.726 ~ 0.877)***	0.788	(0.696 ~ 0.892)***
주관적 인지 건강상태	건강하지 못한 편	1		1		1	
	보통	0.474	(0.439 ~ 0.512)***	0.408	(0.363 ~ 0.458)***	0.485	(0.417 ~ 0.565)***
	건강한 편	0.245	(0.228 ~ 0.263)***	0.214	(0.192 ~ 0.240)***	0.241	(0.208 ~ 0.280)***

*p<.05, **p<.01, ***<.001

V. 결 론

약물 오남용 등의 물질 사용과 자살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Wasserman & McReynolds, 2006; Friedrich et al., 2020), 자살 생각, 계획, 시도 등 자살 행동 가능성에 청소년 약물 오남용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한 검증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한 결과, 세 개 가설 모두 채택되었다. 즉, 청소년 약물오남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보다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등 자살 행동 위험 수준이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ragisic, et al., 2015). 또한, 일반적 특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을 때, 자살 생각, 계획, 시도 모두에서 청소년 약물 오남용 경험이 있는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자살 행동에 대한 위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었다(Darke et al., 2004; Maloney et al., 2007).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가 유의미한 위험요인인 것을 볼 때, 자살의 저연령화가 반영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이정윤, 홍재홍, 2003). 3학년에 비해 신입생인 1학년의 경우 자살생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자살계획과 자살시도의 위험수준이 더 높은 것을 볼 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적응 도움이 필요하며, 자살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 등 세부사항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 학업성적이 하집단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이 상, 중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자살 생각, 계획, 시도에서 모두 위험요인으로 나타나 학교 성적에 대한 부담이 자살 충동의 주요 원인(한국자살예방협회, 2023)이라는 자료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에 상응하는 우수한 성적은 자살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어(Borowsky et al., 2001) 목표하는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도움을 통해 자살예방을 강구할 수 있다. 이상구 외(201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주관적 인지 경제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자살 시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인 또는 노인의 자살 특성과의 차이점을 강조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하집단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이 상, 중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자살 생각, 계획, 시도에서 모두 위험요인으로 나타나 자살에 사회경제적 수준이 주요 영향요인이라는 기존 연구와(Lee, 2006)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는 청

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살 생각, 계획, 시도에 있어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 수행한 동일한 실태조사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손신영, 2014). 주관적 인지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못하는 편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보통 또는 건강한 편으로 인식하는 집단보다 자살 생각, 계획, 시도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신영(2014)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인지 건강상태가 상위일수록 중위 또는 하위 집단보다 자살 생각, 계획, 시도 위험도가 낮다고 주장하여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약물 오남용 및 자살의 영향관계와 발생원인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 생각, 계획, 시도와 같은 위험 행동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파악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을 비롯해 교육부, 지역사회단체의 각 결정권자 간의 밀접한 조정과 협력이 필수적이다(SAMHSA, 2016). 청소년 자살 예방 전문가 및 관련 교육지도자는 청소년 오남용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겪는 우울증, 충동성, 스킬 추구, 생명 위협 행동 등 위험요인(Goldston, 2004). 및 보호요인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SAMHSA, 2016). 최재윤, 이광섭(2011)은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해 사회의학 프로그램의 개발을 강조하며, 단편적, 단기적인 프로그램의 한계에서 벗어나 전문적, 지속적 개입을 통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치료자와 대상자가 사회의학에서 강조하는 자율적, 능동적, 상호의존적 관계를 이루어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할 제언으로는 약물예방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기에 앞서 가장 필요한 예방 교육 강사를 교육할 전문성을 갖춘 인재양성 교육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2024년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에서 연간 5시간에서 7시간 마약 예방교육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약물 예방 교육에 대한 교과과정인 DARE(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 program)는 미국 전역 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DARE 강사 훈련을 받은 경찰관이 청소년들에게 상호작용하며, 약물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양혜정, 김채운, 2022). 국내에서 DARE 교육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논의(양혜정, 김채운, 2022) 및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물의 위험성, 불법약물 온라인 구매 및 대리 구매 위험성 등 약물 예방교육 필수 제공(전지호, 이성규, 2023)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현재 국내 실정에서 경찰관이 전국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약물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에는 약물 또는 마약, 중독 등과 관련된 대학교의 재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같은 민간위탁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배출할 필요가 있다. 또는 인근 지역 대학교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기존의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약물 예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사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일회성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약물 예방 교육을 통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약물예방 교육을 통해 자살 생각, 계획, 시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이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지경, 송현주, 김균희, 정운미. (2022).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박진석, 조진성, 우재혁, 장재호, 최우성, 임용수, 최재연. (2023). 2011-2020년 소아청소년의 의도적 약물중독 경향 분석. *Pediatric Emergency Medicine Journal*. 10(4): 132-141.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2022 자살예방백서.
- 서동용 국회의원실. (2022). ‘2019~2021년 약물 오·남용, 중독 진료 현황’ 보도자료.
- 손신영. (2014). 청소년의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5(3), 1606-1614.
- 신민섭. (1993). 자살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자기 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소윤, 박완주. (2023). 다학제 재발방지 프로그램이 물질사용장애 환자의 중독물질거절 자기효능감, 충동성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32(2), 216-229.
- 양혜정, 김채윤. (2022). 미국의 청소년 마약류 사용 대응 정책 고찰을 통한 국내 정책의 시사점.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4), 127-145.
- 이경재, 김경환, 신동운, 박준석, 김훈, 전우찬, 김현중. (2017). 한국 소아청소년 중독 환자의 경향: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을 이용한 후향적 연구. *대한임상독성학회지*, 15(2), 69-78.
- 이상구, 이윤정, 정혜선. (2011). 남녀 중·고등학생의 자살시도 예측요인. *J Korean Acad Nurs*, 41(5), 652-662.
- 이혜경. (2020). 약물경험 청소년의 자살위험 예측요인: 흡연, 음주행위와 정신건강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9(1), 291-327.
- 전진호, 이성규. (2023). 여성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 왜곡과 습관적 약물 사용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84-106.

- 채수미. (2015). 약물오남용의 실태와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015(10), 66-76.
- 최재윤, 이광섭. (2011). 청소년의 합법적 약물의 남용실태와 사회의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병원약사회지, 28(1), 38-65.
- 한국자살예방협회. (2023). 자살예방의 모든 것. 학지사.

[외국문헌]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
- Bostwick, J. M., Pabbati, C., Geske, J. R., & McKean, A. J. (2016). Suicide attempt as a risk factor for completed suicide: even more lethal than we kn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3(11), 1094-1100.
- Borowsky, I. W., Ireland, M., & Resnick, M. D. (2001). Adolescent suicide attempts: risks and protectors. *Pediatrics*, 107(3), 485-493.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 Control: Data & Statistics (WISQARSTM) 2009. [Accessed November 16 2010]. <http://www.cdc.gov/injury> .
- Darke, S., Ross, J., Lynskey, M., & Teesson, M. (2004). Attempted suicide among entrants to three treatment modalities for heroin dependence in the Australian Treatment Outcome Study (ATOS): prevalence and risk factor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73(1), 1-10.
- Dragisic, T., Dickov, A., Dickov, V., & Mijatovic, V. (2015). Drug addiction as risk for suicide attempts. *Materia socio-medica*, 27(3), 188.
- Friedrich, J. M., Sun, C., Geng, X., Calello, D. P., Gillam, M., Medeiros, K. L., ... & Mazer-Amirshahi, M. (2020). Child and adolescent benzodiazepine exposure and overdose in the United States: 16 years of poison center data. *Clinical toxicology*, 58(7), 725-731.
- Goldston, D.B. (2004). Conceptual issues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 between suicidal behavior and substance use during adolescenc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76: S79-91.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376871604002182>
- Griffin, E., Corcoran, P., Cassidy, L., O'Carroll, A., Perry, I. J., & Bonner, B. (2014). Characteristics of hospital-treated intentional drug overdose in Ireland and Northern Ireland. *BMJ open*, 4(7), e005557.
- Harris, E. C., & Barraclough, B. (1997). Suicide as an outcome for mental disorders. A meta-analysi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0(3), 205-228.
- Kessler, R. C., Borges, G., & Walters, E. E. (1999). Prevalence of and risk factors for lifetime suicide attempt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6(7), 617-626.
- Maloney, E., Degenhardt, L., Darke, S., Mattick, R. P., & Nelson, E. (2007). Suicidal behaviour and associated risk factors among opioid dependent individuals: A case-control study. *Addiction*, 102(12), 1933-1941.
- Pompili, M., Serafini, G., Innamorati, M., Dominici, G., Ferracuti, S., Kotzalidis, G.D., & Lester, D. (2010). Suicidal behavior and alcohol abus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7(4): 1392-1431. <http://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872355/pdf/ijerph07-01392.pdf>.
- Publications and Materials, Addressing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in Substance Abuse Treatment. Treatment Improvement Protocol (TIP) 50. SAMHSA, SMA 09-4381, 2009. Available at www.store.samhsa.gov.
-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2008). Substance Abuse and Suicide Prevention: Evidence and Implications—A White Paper. (DHHS Publication No. SMA-08-4352). Rockville, MD: SAMHSA.
-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2016). Substance Use and Suicide: A Nexus Requiring a Public Health Approach.
- Tejedor, M. C., Diaz, A., Castillon, J. J., & Pericay, J. M. (1999). Attempted

suicide: repetition and survival findings of a follow up study.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0(3), 205-211.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and National Action Alliance for Suicide Prevention. (2012). 2012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Goals and Objectives for Action. Washington, DC: HHS. Retrieved from.

Wasserman, G. A., & McReynolds, L. S. (2006). Suicide risk at juvenile justice intak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6(2), 239-249.

Wilcox, H.C., Conner, K.R., & Caine, E.D. (2004). Association of alcohol and drug use disorders and completed suicide: An empirical review of cohort studie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76: S11-S19. <http://www.ncbi.nlm.nih.gov/pubmed/15555812>.

The Effect of Juvenile Drug Abuse Experience on Suicidal Ideation, Suicidal Planning, and Suicide Attempts*

Sim, Hye In**

The problem of misuse of various addictive drugs such as depression such as “butterfly medicine” and “fentanyl patch” and medical drugs used to treat ADHD is increasing rapidly in adolescents, which can be seen as serious. At the same time, suicide is the main cause of death in adolescents, and the number of adolescents visiting the emergency room has increased due to suicide attempts due to drug abuse, so it was necessary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drug abuse and social problems such as suicide through empirical studies. A total of 54,848 sample data from the second data of the 17th (2021) Youth Health Behavior Survey organiz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were analyzed to conduct this stud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drug abuse experience with suicidal thoughts, suicidal planning, and suicide attemp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perience of drug abuse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 on adolescent suicidal thoughts, plans, and attempts.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cessity of a policy for operating a drug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to prevent suicidal behavior of adolescents.

❖ Key words: Juvenile, Drug Abuse, Suicidal Ideation, Suicidal Planning, Suicide Attempts

투고일 : 12월 13일 / 심사일 : 12월 26일 / 게재확정일 : 12월 31일

* This work was supported by Youngsan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23.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at Youngsan University

형사정책연구 봄호 논문투고 안내

형사정책연구 '봄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접수 마감일은 2024년 2월 29일(목)까지입니다. 관련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내용

- 제목(한글 및 외국어)
- 성명, 소속 및 직위(한글 및 외국어)
 - ※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
- 초록(한글 및 외국어)
- 주제어(한글 및 외국어)
- 본문(항목번호는 I, 1, 가, 1), 가) 순으로 구성하며 제목위, 아래 한행씩 띄어준다)
 - ※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하고 번역문인 경우 원문 별도 첨부
 - 외국어는 단일언어 표기시에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고 국문번역본을 첨부
- 참고문헌(국내, 구미, 일본의 순으로 저자별 가나다 및 알파벳순으로 하되 단행본, 논문의 순으로 정리, 단 구미문헌의 경우 저자의 성을 먼저 기록한 후 이름을 기록하고 책명, 발행연도 순으로 구성)
- 각주(논문 하단에 위치하되 일련번호를 명시)
- 제목, 성명, 소속 및 직위, 초록 주제어의 외국어 작성시, 반드시 영문을 포함하여 작성

2. 원고작성

- 용지종류 및 여백 : A4, 위쪽 35mm, 오른쪽 및 왼쪽 30mm, 아래쪽 30mm
- 글자모양 및 크기 : 신명조체 11포인트(각주는 10포인트)
- 줄 간격 : 180%
- 분량 : A4 20매 내외(최대 25매 초과 불가)
- 작성 : 한글 프로그램 사용

3. 투고자격 및 심사

- 원고 투고자의 자격은 학계의 대학교수, 실무계의 변호사, 판사, 검사 등 형사정책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연구경력자로 한다.
- 제출된 원고는 형사정책 관련분야의 학술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제출된 원고는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원고 내용의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 필자는 이에 응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4. 원고접수 마감 및 제출처

- 원고접수 마감일 : 2024년 2월 29일(목)
- 제출처 : <https://kic.jams.or.kr>
- 전 화 : (02) 3460-9247
 - ※ 투고논문은 투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성명, 소속 등 신상정보를 반드시 삭제하여 주시고,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은 투고자에게 있습니다.
 - ※ 논문투고 시 발생하는 심사료 및 게재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서 부담합니다.

CALL FOR PAP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IM AND SCOP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IJCJ), a biannual and peer-reviewed English journal published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ICJ), facilitates comprehensive analysis and evidence-based research on crime trends in order to make a contribution to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olicies.

The IJCJ will share academic and practical views from home and abroad and play a pivotal role as an international academic arena for criminal justice policies.

SUBMISSION DETAILS

- Manuscripts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and should be no more than 10,000 words in MS word.
- Please provide an abstract which should be no more than 200 words in length and a maximum of 5 key words.
- All papers should identify all authors and provide their contact information such as phone numbers, full postal addresses, email addresses, affiliations and so on.
- Authors should ensure that they have written entirely original works, and should not publish manuscripts describing essentially the same research in more than one journal.
- Honorarium (USD 2,000 or KRW 2,000,000) will be paid when papers are accepted for publication.
- All manuscripts must be submitted to the managing editor Ms. Hyewon KWON at ijcj@kicj.re.kr

AREA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IJCJ) invites papers from many different realms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at both regional and global levels. Any issues related to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will be welcomed such as:

Community Sanction, Corrections, Corruption & White Collar Crime, Crime Prevention & Protection, Crime Trends, Crime & Deviance, Criminal Investigation, Criminal Law & Policy, Criminal Procedure, Cybercrime, Drug, Terrorism & Organized Crime, Economic & Corporate Crime, Information, Technology & Forensic Science, 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Justice, Penology, Police & Policing, Violent Crime.

간행물출판위원회

위원장 : 홍 영 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위 원 : 김 한 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 혜 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 성 훈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문 준 섭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해양경찰학전공 교수)

유 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전 현 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탁 희 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홍 승 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 지 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가나다 순)

간 사 : 장 종 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영지원실 책임행정원)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36호, 2023·겨울호)

발행인 : 하 태 훈

발행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02)3460-9247

등 록 : 1990년 4월 3일 바-1360

발행일 : 2023년 12월 30일

인 쇄 : 고려씨엔피
전화 (02)2277-1508

본 학술지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함

[정가 : 10,000원]

